





| SRI-기본-2017-05 |

# 민관협력형 근린공원 관리실태와 개선방향 연구

A Research on the management Condition & Improvement Direction of Maintenance Based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small Neighborhood parks in Suwon

김주석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주석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이다미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 2017 수원시정연구원

---

발행인 이재은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더함파크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쇄 2017년 10월 31일

발행 2017년 10월 31일

디자인 아이콘커뮤니케이션 Tel. 031-245-5500

I S B N 979-11-87778-77-6 (93530)

---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김주석. 2017. 「민관협력형 근린공원 관리실태와 개선방향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비매품

## 국문 요약

민관협력의 도시관리 정책방안의 일환인 본 연구는 공원 관리효율화 및 이용증대,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원시 내 근린공원을 주변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다루는 것으로, 민관협력형 공원관리 제도의 운용지침 등 정책의 실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를 통해 근린공원과 주민참여에 대한 개념적 의미를 확인하여 정책방향의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고, 수원시가 진행해 온 근린공원 관리실태와 시민참여를 위한 노력을 수원시 관련부서 및 기관 자료, 관계자(참여 주민·기관, 행정공무원)의 인터뷰를 통해 파악하였다.

민관협력의 공원관리 현황(비용, 형태, 조직, 내용) 및 향후 참여에 대한 공원 주변 거주민의 인식조사와, 서울(공원돌보미) 및 요코하마(공원에호회)의 제도사례 조사 및 운영특성 비교를 통해 향후 제도수립에 있어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공원주변 거주민 인식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주민이 공원 관리는 행정과 용역업체가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주민참여를 통한 공원관리제도에 대한 인식은 공원관리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소수의 주민 및 그 주변인들로 한정되어 있었다. 향후 관련제도의 홍보에 있어 공원관리 참여 과정과 연동된 홍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향후 공원관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기존의 참여경험 비율과 비교해 높은 수준을 보이며, 이들의 참여 이유는 마을에 대한 애착, 봉사활동, 이웃 간 교류·친목도모 등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민들에 의한 공원관리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활동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게 한다. 한편, 공원관리에 참여의사가 없다는 주민들은 대부분 생활이 너무 바쁘다는 이유가 대부분이었으나, 조경 등 관리전문기술이 없어 참여하지 못한다는 주민들도 다수 있었고, 공원관리 활동 참여가능 영역으로는 ‘공원청소’, ‘잡초제거’, ‘공원이용 및 놀이지도’ 등의 응답이 많고, ‘화초식재’, ‘전정’ 같은 전문관리 항목은 응답이 낮았다. 따라서 주민들도 공원관리에는 별도의 전문기술이 요구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주민참여제도의 설계에 있어서도 조경관리기술 학습과정을 포함하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주민참여를 통한 공원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참여시간을 봉사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며, 관리비용지원, 주민의식/관심 증진, 관리도구 지원 또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원관리를 주민에게 맡긴다면, 공원청소, 제초 등 간단한 관리업무부터

시작하고,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과정 속에서 식재 및 전정 등 전문역량을 습득하도록 하여 점차 관리업무를 넓혀가는 단계적 참여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선진사례인 공원돌보미(서울)와 공원에호회(요코하마)의 운영특성을 지원항목, 조직 구성원, 민관관계의 측면에서 차이를 확인하였다. 특히 민관협력의 공원관리 정책을 다룸에 있어 서울은 공원관리의 재정적 부담감소와 관리 효율화에 제도목표를 두고 실행해 왔다고 한다면, 요코하마에서는 이에 더해 관리활동이 지역 주민의 공동체 활동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별도 교육이 아닌 공원관리 활동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 상황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고도화 전문화가 이루어져 가는 진행 관리적 제도운용관점이 적용되고 있다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을 바탕으로 향후 시민참여형 공원관리 제도 구상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5가지 관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행정관리 효율화
2. 공원관리에 있어 민관협력의 목표상
3. 동일 활동에 대한 유사한 가치판단과 피드백
4. 활동과정을 통한 역량강화와 단계별 업무변화
5. 신규구성원 유입 유도

그 외에 도시공원은 아니지만 공동주택 단지 내에도 수목 및 조경 공간에 대한 관리에도 일선 행정에서 관련 계기를 만들고 이를 주민스스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민관협력, 주민참여, 공원관리, 제도, 지원

## | 차례 |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1. 연구범위 .....	3
2. 연구방법 .....	3
제2장 이론적 고찰 .....	5
제1절 공원의 분류 .....	5
1. 법정공원의 종류 .....	5
2. 도시공원의 분류 .....	6
제2절 용어의 정의 .....	9
1. 근린공원 .....	9
2. 주민참여 .....	10
제3절 공원관리와 주민참여에 대한 연구현황 .....	13
제3장 수원시 근린공원관리와 시민참여 실태 .....	17
제1절 근린공원 운영실태 .....	17
1. 공원조성현황 .....	17
2. 공원녹지의 조성·관리 현황 .....	32
3. 공원관리상의 과제 .....	35
제2절 수원시의 시민참여형 공원관리를 위한 노력 .....	36
1. 정책의지 및 관련 사업 .....	36
2. 공원사랑 시민참여단 .....	42
3. 시민참여형 공원관리 제도운용 과제 .....	45
제3절 근린공원 거주민 인식조사 .....	46
1. 조사내용 및 방법 .....	46
2. 설문응답자 특성 .....	47
3. 공원관리에 대한 주민인식 .....	49
4. 공원관리에 대한 참여의식 .....	51

제4절 소결 .....	57
제4장 시민참여형 근린공원 관리 사례와 시사점 .....	59
제1절 서울시 공원돌보미 .....	59
1. 공원돌보미 제도 개요 .....	60
2. 공원돌보미 결성절차 및 지원 .....	62
3. 제도 운용특성 및 효과 .....	64
제2절 요코하마시의 공원애호회(公園愛護會) .....	64
1. 공원애호회 개요 .....	66
2. 애호회의 결성 및 지원 .....	68
3. 애호회 제도 운용특성 및 효과 .....	73
제3절 공원돌보미 제도(서울)와 공원애호회 제도(요코하마)의 운용특성 비교 .....	75
제5장 민관협력형 근린공원관리 과제와 방안 .....	79
제1절 시민참여에 의한 공원관리제도의 과제 .....	79
제2절 민관협력형 근린공원제도 개선방향 .....	82
제3절 주민참여형 공원관리제도 도입 .....	84

## | 표 차례 |

<표 2-1> 도시공원의 법적 유형 .....	6
<표 2-2> 공원 연구 동향 분류와 본 연구의 위치 .....	15
<표 3-1> 수원시 공원 현황 .....	18
<표 3-2> 수원시 공원 종류별 면적규모 .....	18
<표 3-3> 소공원 현황 .....	19
<표 3-4> 소공원 시설현황 .....	20
<표 3-5> 어린이공원 현황 .....	21
<표 3-6> 수원시 근린공원 .....	27
<표 3-7> 수원시 공원 조성·관리 업무현황 .....	32
<표 3-8> 2017년 도시공원 관리 공사 및 용역 추진현황 .....	33
<표 3-9> 2017년 도시공원 관리 공사 및 용역 추진현황 .....	34
<표 3-10> 소공원·어린이공원 용역현황(전체) .....	34
<표 3-11> 소공원·어린이공원 용역현황(청결관리 단일사업 국한) .....	35
<표 3-12> 어린이공원, 소공원 청결관리 민간위탁 현황(2017) .....	37
<표 3-13> 어린이 공원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 심사 기준표 .....	38
<표 3-14> 공원사랑 시민단 2016년도 주요 활동내용 .....	43
<표 4-1> 서울 그린트러스트의 서울숲 관리 시민참여 프로그램 .....	59
<표 4-2> 공원돌보미 활동현황 .....	50
<표 4-3> 공원돌보미 활동그룹 특성에 따른 활동유형 .....	61
<표 4-3> 공원돌보미 제도 기대효과 .....	64
<표 4-5> 공원·녹지계획 수립 당시의 수목지 지키기 관련 시민활동 현황 .....	65
<표 4-6> 요코하마시 공원에호회 활동현황 .....	66
<표 4-7> 애호회비(사례금) 지원액수 .....	71
<표 4-8> 애호회비(사례금)의 사용처 .....	71
<표 4-9> 공원에호회 활동별 지원내용 종합 .....	72
<표 4-10> 공원돌보미 제도와 공원에호회 제도의 운용특성 비교 .....	76
<표 5-1> 시민과 주민의 구분 .....	82

## | 그림 차례 |

<그림 3-1> 수원시 공원현황도 .....	17
<그림 3-2> 수원시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위치도 .....	26
<그림 3-3> 수원시 공원녹지관련 조직도 .....	32
<그림 3-4> 수원시내 반경 5km 범위 .....	39
<그림 3-5> 한일타운 조경관리 두레공동체 활동 모습 .....	41
<그림 3-6> 공원사랑시민단 활동모습(청소, 현장강좌, 간담회, 홍보모집) .....	42
<그림 3-7> 설문응답자특성, 성별 .....	47
<그림 3-8> 설문응답자특성, 연령 .....	47
<그림 3-9> 설문응답자특성, 거주기간 .....	48
<그림 3-10> 설문응답자특성, 직업 .....	48
<그림 3-11> 설문응답자특성, 소득수준 .....	49
<그림 3-12> 설문응답자특성, 단체활동 경험유무 .....	49
<그림 3-13> 거주지 인근 공원 이용 빈도 .....	50
<그림 3-14> 거주지 인근 공원 이용 이유 .....	50
<그림 3-15> 거주지 인근 공원 미이용 이유 .....	51
<그림 3-16> 공원관리 수행 주체에 대한 인식 .....	51
<그림 3-17> 공원관리 제도 인지정도 .....	52
<그림 3-18> 공원관리 참여경험 .....	52
<그림 3-19> 공원관리 주민참여 의지 .....	53
<그림 3-20> 공원관리 참여 이유 .....	53
<그림 3-21> 공원관리 비참여 이유 .....	54
<그림 3-22> 공원관리 가능 활동 .....	54
<그림 3-23> 공원관리 주민참여 빈도 .....	55
<그림 3-24> 공원관리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	55
<그림 3-25> 공원관리 주민참여 진행 방식 .....	56
<그림 4-1> 공원돌보미 활동 절차 .....	63
<그림 4-2> 청소, 화단관리, 아이들의 참여, 놀이 등 애호회 활동 모습 ...	67
<그림 4-3> 공원에호회 지원체계도 .....	69
<그림 4-4> 화단가꾸기, 관목관리강습, 제초기안전이용강습, 퇴비장만들기, 수목명찰만들기, 이벤트 지원 .....	70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 민관협력의 도시공원관리

참여와 협동의 도시관리를 지향하는 휴먼시티 수원은 행정중심 조정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근린공원에 대해 관리비용의 절감 및 커뮤니티증진 관점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관리제도를 도입, 운용하고 있다.

특히 ‘도시경관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관점에서 2013년의 ‘공원사랑 시민단<sup>1)</sup>’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조경특강’ 등 시민들의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활동에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시민이 만드는 공원관리계획’ (2015), ‘민간 분야 조정발전 기본 계획’ (2016)등 계획과정에서 부터의 시민참여를 모색하고 있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지난 2014년 도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수원 도시계획 지속발전 방향연구를 통해 공원관리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지역 공동체 기반 공원관리 조직 육성을 위한 정책인 ‘지역밀착형 공원관리『공원사랑 주민모임』’이 제안되었으나, 이에 대한 현장 반영을 위한 세부적 검토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제도에 대한 세부적 검토가 없어, 주민자치회에 의한 공원관리 위탁운영이라는 선도적 행정 노력도, 결과적으로는 단순한 청소위탁 수준에 그치고 지역의 공동체적 활동에의 기여는커녕, 위탁관리의 효용성면에서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공원을 관리함에 있어 관리효율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운용 기준의 제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 2) 연구의 목적 : 지역공동체 기반의 공원관리

수원시의 공원관리 분야에 있어 시민참여는 공원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변화 정도를 목표로 단발적이고, 봉사적인 활동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며, 결과적으로 전정이나 전지 등 조

1) 공원사랑 시민단은 단발성 행사에 그쳐 전지 등 녹지관리의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 공원관리는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조경교육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청소 등 ‘비 기술분야’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참여, 특히 장소에 기반하여 관리대상인 공원주변 거주민 조직에 의한 공원관리는 근린 주민의 공원이용 유도·활성화는 물론, 공원관리활동 자체가 지역 거주민 교류와 화합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공원관리의 분야특성상 광범위한 세대간 교류가 가능하다.

한편, 지역주민조직에 의한 공원관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활동의 준비와 실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이 필요하며,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전문용구의 대여, 수관을 재단하고 생장을 촉진하는 기술적 노하우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공원관리의 효율화는 물론, 공원이용률을 높이고, 궁극적 목표인 공동체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공원관리 참여 조직간의 정보와 경험교류와 더불어 관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 내 주민들과의 교류기회 마련도 요구된다.

본 연구는 도시민의 일상생활권역에 위치하는 공원은 지역 내 거주환경의 질적인 측면은 물론, 지역공동체 활동의 공간적 구심점으로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도심 거주지의 소규모 공원을 중심으로 공원관리 운용실태를 조사하고, 공원 관리효율화 및 이용증대,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공원관리 제도의 운용지침 등 실행방안의 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수원시에서의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공원관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것으로 현황파악에 있어 공간적 범위는 수원시 행정구역내에 위치하는 도시공원 중 조경관리에 전문적이지 않은 일반 주민들이 약간의 학습과 의지로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소규모 공원을 대상으로 하며, 의견 수렴의 범위는 해당 공원 주변 500m이내에 거주하는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내용적 범위는 민관협력의 공원관리 실태(비용, 형태, 조직, 내용)와 공원주변 거주민 공원관리 관련 인식을 대상으로 한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다루는 근린공원과 주민참여에 대해 기존연구 및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개념적 의미를 확인한다.

수원시의 근린공원 관리실태와 시민참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수원시 관련부서 자료 및 관계자(담당공무원, 참여주민)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다.

주민참여를 통한 공원관리에 관한 거주민 인식조사를 위해 주민자치활동이 활발한 동을 각 구별로 1개동씩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통해 선정하고, 해당 동에서 적정한 규모의 공원을 설정하여 그 공원 주변 거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선진사례로는 우리나라에서 민관협력의 도시관리에서 비교적 선도적이라 할 수 있는 서울의 공원관리 정책 중 본 연구에 부합하는 현행 운영제도(공원돌보미)를 선정하고, 일본에서 민관협력의 도시관리의 선도적 지자체로 일컬어지는 요코하마시의 관련 제도(공원애호회)를 선정하였다.

해당 사례의 제도운용특성은, 각각의 제도기준과 운용 매뉴얼 등의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확인, 정리한다.



## 제2장 이론적 고찰

### 제1절 공원의 분류

#### 1. 법정공원의 종류

우리나라의 공원의 종류를 보면, 우선 관할 법령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함)”에 근거한 “도시공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만한 지역으로, 관리주체 행정 단위를 기준으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구분되며, 여기에 자연생태적 측면에서의 “지질공원”이 포함된다.

도시공원은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을 지닌 “생활권공원”과 공원의 성격에 따른 “주제공원”으로 분류되며, 생활권공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세분되고, 주제공원은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기타로 세분된다.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sup>2)</sup>되는 공원이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도시민의 삶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으로 한정한다.

2) 도시공원법 제2조제3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다만, 도시공원법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제외한다.

## 2. 도시공원의 분류

도시공원의 법적 구분은 다음과 같다.

<표 2-1> 도시공원의 법적 유형

대분류	소분류			규모기준	목적					
생활권 공원	소 공 원	근린 소공원	도시형 전원형	1만㎡미만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 도모					
			도시 소공원				광장형 녹지형			
		어린이공원 (반경250m 이하)					1500㎡이상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		
		근 린 공 원	근린생활권 (반경0.5km이내)				1만㎡이상	일상 이용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	
도보권 (반경1km이내)			3만㎡이상							
도시지역권			10만㎡이상	주말 이용						
광역도시권			100만㎡이상							
주제 공원	역사공원			-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동물 등을 활용한 도시민의 휴식·교육					
	문화공원			-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한 도시민의 휴식·교육					
	수변공원			-	도시의 하천변·호수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한 도시민의 여가·휴식					
	묘지공원			10만㎡이상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 제공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					
	체육공원			1만㎡이상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 배양					
	도시농업공원			1만㎡이상	도시민의 취미·여가·학습 또는 체험 (공원형 도시농업)					
	기타 공원			-	그 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 공원.					

자료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pp.1-8 기준,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요약정리

### 1) 생활권 공원

#### (1) 소공원<sup>3)</sup>

소공원은 도시지역안의 자투리 땅 등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으로 설치 위치 및 성격에 따라 근린소공원과 도심소공원으로 구분된다.

#### ① 근린소공원

근린소공원은 근린생활권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의해 공유되는 정원 개념의 소규모 휴식공간으로 주민들의 일상적인 휴식 및 어린이들의 놀이를 위한 공간으로써 간선도로나

3) 수원시의 경우 대부분 신규 아파트 단지개발 및 주택용 택지개발 등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개발사업자에 의해 조성되고 있다.

이면도로변에 접하거나 주민이 도보로 이용이 용이한 지역에 지정한다.

- 도시형 근린소공원: 기존 도시지역 내 시가지 혹은 신도시 주거지역에 조성되는 공원으로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터, 나대지 또는 녹지대 등을 활용하여 지정·조성할 수 있다.
- 전원형 근린소공원 : 기존 도시지역 외곽지역 혹은 군 단위 지역에 조성되는 공원으로 쉼터 마을 보호수나 정자목과 같은 마을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소공원으로 지정·조성할 수 있다.

## ② 도심소공원

도심소공원은 고밀도의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심지역에 거주자 이외에 그 주변 지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소규모 휴식공간 또는 녹지공간으로써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지정한다.

- 광장형 도심소공원 : 고층 건물 주변의 자연공간으로서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이며, 주로 간선도로변의 고층 건물군 사이에 조성되는 것으로 시설중심의 공원이다.
- 녹지형 도심소공원 : 도시지역 내 이용의 측면보다 녹지로서 보는 측면이 강조되는 소공원으로서 화초류 또는 보행자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수경시설 위주로 조성되는 공원이다.

## (2)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은 근린에 거주하는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놀이공간으로서 근린주구의 공원이다. 유치거리는 250m이하이며, 규모는 1500㎡이상으로 한다.

## (3) 근린공원

근린공원은 이용거리 등에 따라 근린생활권, 도보권, 도시지역권, 광역권 근린공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일상이용 공원

근린공원중 근린생활권공원과 도보권 공원은 일상의 옥외 휴양·오락·학습 또는 체험 활동 등에 적합한 조경시설·휴양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편익시설 및 도시

농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주거 인근 또는 근린에 설치하는 공원이므로 근린거주자의 보건·휴양·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휴양시설·조경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 위주로 설치할 수 있다.

-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은 주로 인근(반경 500m 이내)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다.
- 도보권 근린공원은 주로 도보권 안(반경 1,000m 이내)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다.

## ② 주말이용 공원

도시지역권 근린공원과 광역권근린공원은 주로 주말의 옥외 휴양·오락·학습 또는 체험 활동 등에 적합한 조경시설·휴양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편익시설 및 도시농업시설 등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도로·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은 필수시설로 한다.

-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은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다.
- 광역권 근린공원은 하나의 도시지역을 초과하는 광역적인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다.

## 2) 주제공원

역사공원은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며, 문화공원은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다.

수변공원은 하천, 호수, 저수지, 댐, 바다 등의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공원으로, 하천·호수 등의 수변과 접하고 있어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묘지공원은 주로 묘지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과 그 밖의 시설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정숙한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치하고, 도로·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은 필수시설이며, 면적은 10만㎡ 이상으로 한다.

체육공원은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으로, 면적은 1만㎡ 이상이어야 한다.

도시농업공원은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원으로, 면적은 1만㎡ 이상이어야 한다. 그 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제2절 용어의 정의

### 1. 근린공원

근린공원이란 개념은 19세기 미국에서 도시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민중의 휴양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에서 그 기원을 두고 있다. 19세기 말 사회개혁인사들이 근린공간의 개선에 노력하였고, 이런 노력을 통해 1903년 어린이 놀이장 및 근린공원 이 두 개념이 정식 법령에 귀속되었다.(Cranz and Boland, 2004; 양외 외, 2017: 23, 재인용) 근린공원은 지역사회 내의 서비스적 개방공간으로 환경오염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생태적 평형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와 자연생태환경간의 화합적 관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며, 그와 동시에 도시주민의 중요한 휴양, 놀이, 활동장소로서 사람들의 교제와 왕래를 증진시키고, 이웃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측면으로, 도시화 정도의 과속화와 현대의 빠른 생활리듬에 따라 사람들의 생기, 행위, 사회교제, 각 측면에서 점점 이런 서비스 반경이 짧아지고, 환경이 아름다우며, 수시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으며, 자신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근린공원을 갈망하게 되었다.(Shen, 2007; 양외 외, 2017:23, 재인용)

본 연구는 도시민들이 일상적 생활영역 내에 위치하는 공원에 대한 주변 주민들의 자주적, 조직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 대상이 되는 ‘일상적 생활영역 내에 위치하는 공원’ 을 일반화 할 수 있는 수리적 정의가 요구된다.

근린공원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약500m이내의 근린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휴양, 산책에 활용되는 공원(일본어 사전 大辞林)
- 도심지의 주택가 주변에 있어 시민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조그마한 공원(다음국어사전)
- 도시공원의 일종으로 [근린주구]의 중심에 약 2ha 정도의 것을 1개소 설치하며, 유지거리는 보통 500m를 표준으로 하고 있음. (AURIC 용어의 정의)

공원의 법상 분류기준을 보면 작은 규모부터 소공원 및 어린이 공원<sup>4)</sup>은 1만㎡이내이며,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은 유치거리 500m이하, 1만㎡이상-3만㎡미만이며, 그 상위규모인 도보권 근린공원은 유치거리 1km이내, 3㎡이상 10만㎡ 이내로 설정되어 있다.

4) 어린이공원은 그 특성상 주 사용자가 어린이임을 고려하여 유치거리를 250m로 한정하고 있다.

이상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는 근린공원은,

‘거주지로 부터 500m이내에 위치하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원으로서 3만㎡(도시공원법상 근린생활권 근린공원규모) 이내의 공원’

으로 한다.

## 2. 주민참여

김홍렬 외(2015)는 주민참여는 ‘지역공동사회 주민들이 그 사회 일반적인 일에 관계되는 의사결정에 힘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라는 Cunningham(1972)의 주장과 ‘정책결정에 대한 영향이라기보다는 관리적 통제 측면에서 강조된다.’ 는 Arnstein(1969)의 주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공식적인 권한<sup>5)</sup>을 가지지 아니한 주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으로 정의하였다.(김홍렬 외 2015:129).

도시계획상 정비사업 수행에서의 ‘주민참여’ 는, 특정계획이나 활동에 대한 찬반 의사 전달과 그 반영 수준이 아니라, “어떤 사업의 시행의 여부에서의 직·간접적으로 이해가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로서의 주민들이 해당 사업의 발의와 계획의 수립, 시행과정에 주체적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1:136)로 정의된다.

주민참여의 효과는 정책의 효율성과 공동체성의 보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의정치 체제 속에서 시의회가 시민성을 대표하지만, 업무의 유능성과 의원선출의 불일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발정책수립에 있어 대의제보다는 개발과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의 당사자인 주민자신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며(박학로, 1980:60-61), 이러한 관점에서 주민들은 그들이 가진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시 행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김찬동, 2015:4).

자치적 관점에서조차 담당자로서 주체적인 주민은 주민의 정부활동을 감시하고, 행정의 질 개선을 촉진한다고 하였다(김홍렬 외 2015:129).

공동체 관점에서, 리커트(Lickert, 1961:78)는 참여를 통한 관리는 보다 높은 생산성을 낳고 소속감을 갖게 하며, 재개발 목표와 수행과정에 대한 개개인의 정체성을 갖게 하여 주민과 기관과의 관계를 개선시킨다고 보았으며, 하성규·김태섭(2003:24-30)은 주택과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공동체의 특성을 유지·보전하며, 해당주민에게 필요한 주택을 적정하게 공

5) 김학로는 서유립의 각종 지방공동체 직능집단과 행정기능과의 관계현황 조사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라이즈만(A.F. Leemans)교수의 주장을 인용하며, 이러한 공동체적 주민참여가 공식적 권한을 갖지는 않지만 대표성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김학로, 1980:60-61)

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았다. 세코 카츠호(Seko kazuhō, 1998:46-48)는 행정과 주민의 책임과 역할분담을 통한 주민자치의 실현, 다양한 주민의 폭넓은 참여와 주민과의 행정의 합의형성, 행정의 분야별 대응의 한계를 넘어서는 종합적 대응체계로서의 행정의 종합화, 주민간 교류를 통한 커뮤니티형성 등의 목적이나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주민참여를 정의하는데 있어 대상 주민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주민참여에 있어 주민들의 의미는 특정 공청회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기위해 행정이 설정한 장소와 기간에 참여한 주민들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대상지역에 거주하거나 영업을 영위하는 전체 주민을 중심으로 소유관계자 등을 포괄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모든 관계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패턴을 존중한다고 하면, 그들의 일상의 삶속에서 가능한 의견개진의 기회를 제공하는 관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일반적 주민들은 자신의 생계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틀을 중시하며, 지역에 대한 검토는 상시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민의견 수렴행위로 이루어지는 공청회나 공람은 해당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들의 활동, 즉 일상생활보다 우선시 하는 행위 등을 요구하나 이는 개인의 삶에 있어 희생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주민의견 수렴이라 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전체의견제시의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주민참여를 충분히 보장해주기에는 부족하다는 문제제기도 자주 있었다(조필규, 2010: 64).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민참여는,

‘행정의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대상지역의 일반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개진하거나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상태에서, 대상 주민들 개개인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행정과 협의해 가는 일련의 과정행위’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한 주민참여는 공동체 의식고양, 비활용 인력자원의 동원, 정책의 환류, 주민상호간의 신뢰감 확보, 주민운동에 대한 대응책, 기존정치세력에 대한 대응, 주민간의 이해대립 조정, 행정수요의 경감 등(구자훈 외, 1996)과 더불어 도시관리에 따른 사용자 참여관점에서 계획의 적절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의 소속감 형성, 주민과 행정사이의 신뢰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한편, 김해숙 외(2014), 김홍렬 외(2015)은 주민의 여러 문제와 갈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 자체가 목적이 되며 매우 중요하며, 참여의 주도성에 따라 공공주도형·주민주도형·주민운동형 참여로, 제도성에 따라 제도적·비제도적 참여로, 성격에 따라 개별·집단적 참여로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실제 특정 지역단위의 도시정비 사업진행은 특정 시점이 아닌 일정한 기간을 소요하는 것으로 주민참여의 대상주제와 시기에 따라 참여 유형은 변형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며, 신규 혹은 중첩되는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특정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주민참여를 통하여 행정은 주민들의 권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동등하게 협력하도록 노력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김찬동, 2015:4).

### 제3절 공원관리와 주민참여에 대한 연구현황

우선 우리나라의 도시공원의 관리와 관련된 연구를 보면, ‘공원이용’, ‘공원조성’ 및 ‘공원관리’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공원이용’에 관한 연구는,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과정에서 드러나는 제한요소와 기회요소를 분석(서주환 외, 2014)하고,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용실태와 만족도를 분석하는 연구(반영운 외, 2014)가 있다. 또한 이용 행태에서 규칙성과 특수성을 밝혀 공원계획과 정책의 방향을 설정(이환기, 1999)하고, 공원 시설유형에 따른 이용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박울진, 김화옥, 2010)가 있으며, 공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연구(김용국, 2005; 이양주 외, 2014)등이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용자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원계획요소를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공원조성’에 관한 연구로는 공원의 형태적 특성을 분석하고(류연수 외, 2012), 공원위치와 공간적 특성을 밝히며(박찬용 외, 2003), 인구와 공원시설의 공간적 분포를 비교하면서 공급적정성에 대한 평가방법론을 제안하는 연구(이경주 외, 2009), 입지 우위지역 선정 방법과 절차개발 연구(김현중 외, 2016) 등 ‘공간·형태적 특성’을 바탕으로 공원입지 선정 및 조성형태 등에 대한 연구가 있다.

한편, 도시공원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시민들은 환경적 접근 보다는 개개인의 삶의 질을 우선한다는 것을 밝히고(박청인, 2010), 민관협력형 녹지 조성의 필요성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안(송인주, 2013)하고, 공원부지에서의 민간개발 허용과 공원을 조성보전을 절충한 특례의 기본방향과 시행지침안을 제시(윤은주, 2011)하는 연구가 있다. 주로 행정의 입장에서 도시계획상 적정 공원의 공급과 행정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민간재원을 활용한 공원조성·확보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 한편, 지역공동체 관점에서 주민 스스로 생활공간에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한평공원 만들기와 같은 기존 공원과 다른 목적을 갖는 공원조성 연구(김은희, 2004)도 이루어졌다.

식생이 아닌 도시계획 분야에서 접근된 ‘공원관리’ 관련 연구를 보면, 공원관리에 있어 시민들의 참여에 관한 것을 주로 다루고 있다. 1985년 서울시의 공원녹지의 정책계획, 사업계획, 집행계획, 관리계획별 주민참여 창구 구분 정리 등 시민들의 참여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1993년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더욱 활발해져 왔다(박울진, 2010:201).

공원 관리주체와 이용자의 공원 관리에 대한 의식을 비교하여 공원관리참여 활성화 방향을 제시(김미나 외, 2009)하거나 공원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

(박울진, 2010; 박청인, 2010)하고, 주민참여가 공원의 관리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김영하 외, 2015) 하는 ‘주민참여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있다.

공원 관리에 있어 주민협력의 필요성과 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살펴보면, 박울진(2010)은 일반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동참할 수 있는 투명한 공원관리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여건의 확실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라 주장하며, 주민참여 의식을 파악함으로써 도시공원녹지 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주민참여 활성화를 모색하였다. 양진희 외(2002)는 공원관리의 주민참여를 장소 귀속감과의 관계로 파악하여 주민참여의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김미나 외(2009)는 서울 숲을 대상으로 공원 관리주체와 이용자의 공원 관리에 대한 의식을 비교하였으며, 시민의식 수준을 한계점으로 지적하고, 공원관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중요하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용근 외(2002)는 초안산 근린공원을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공원관리 참여의사를 조사하였다. 이용객들은 공원관리 참여에 대해 긍정적 의식을 갖고 있지만, 시간이 적게 소요되고 육체적 노력이 필요 없는 소극적 주민참여방식에 있어 적극적인 반면, 육체적 노력이 필요한 적극적 주민참여방식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 의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소극적 주민참여방식의 도입을 통해 폭넓은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시작점이라 하였다. 김홍렬 외(2015)와 김용국 외(2011)는 한국과 해외의 주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운영·관리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주민참여의 과제와 제도적 지원미비를 지적하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원 관리·운영 프로그램 마련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다. 김영하 외(2015)는 현재 주민참여로 인해 관리되는 금강공원을 대상으로 주민참여가 공원 관리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관리주체와 주민참여 조직의 소통이 주민참여에 의한 공원 관리운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했으며, 주민 참여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단체의 역할뿐만 아니라 공원관리 주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유기적 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할 때 공원에 대한 관리비용절감 및 커뮤니티 증진 관점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관리방안과 지역밀착형 공원관리 실천방안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주민들의 공원관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지역밀착형 공원관리를 실천하기 위한 지침 마련에 그 차별성이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 불능과 관리비용 절감효과가 없는 수원시의 현 운영제도에 한계를 파악하고 주체적인 공원관리 실천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표 2-2〉 공원 연구 동향 분류와 본 연구의 위치

연구주제	연구내용		
공원이용	이용활성화	이용 제한요소와 기회요소	
		이용실태 및 만족도	
		이용 행태의 규칙성과 특수성	
		이용자 의식	
	시설 및 프로그램	서비스 유형	
서비스 관리			
공원조성	경관생태		
	공간·형태적 특성 분석	공급적정성 평가방법론	
		입지 우위지역 탐색 방법과 절차	
		위치와 공간적 특성 파악	
공원관리	조성 및 관리유형		
	주민(민간)참여	주민참여의 효과	
		주민 인식	본 연구의 범위
		제도	



## 제3장 수원시 근린공원관리와 시민참여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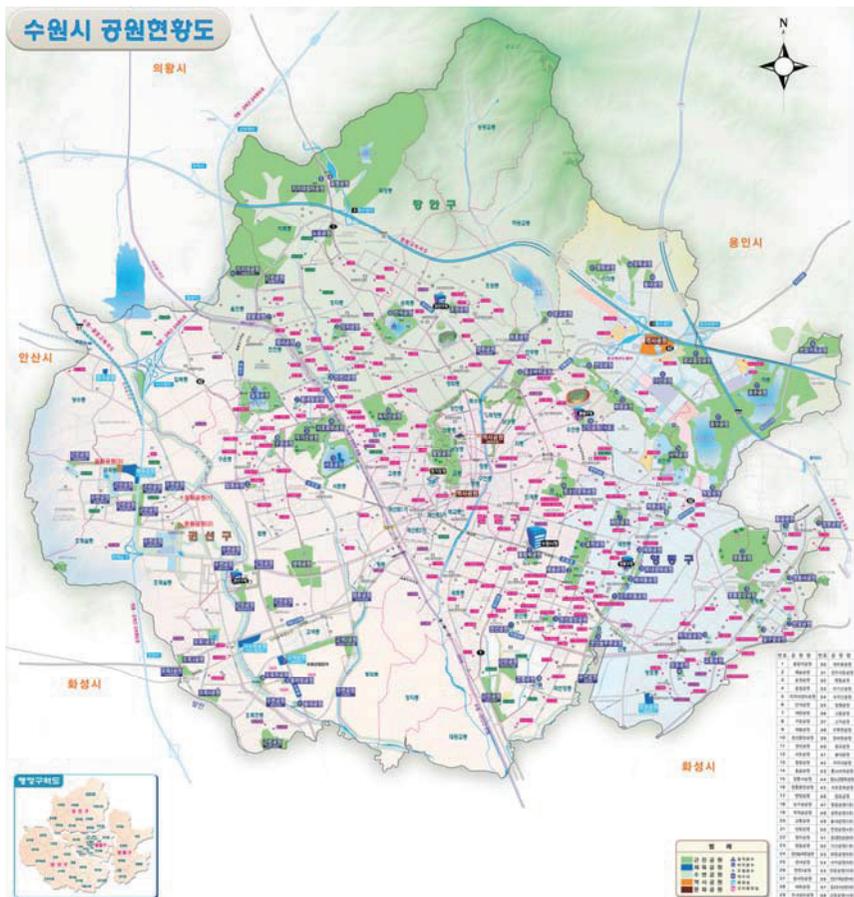
### 제1절 근린공원 운영실태

#### 1. 공원조성현황

##### 1) 수원시의 공원 현황 일반

수원시의 공원은 2017년 5월을 기준으로 수원시 내에 총 320개소(소공원 23개소, 어린이공원 199개소, 근린공원 82개소, 역사공원 1개소, 문화공원 3개소, 수변공원 10개소, 체육공원 2개소)로 약 7.8km<sup>2</sup>가 지정되어 있다.

그 분포는 다음과 같다.



자료: 수원시청(<http://www.suwon.go.kr>)

<그림 3-1> 수원시 공원 현황도

공원종류별로 보면, 소공원 23개소, 27,715.1㎡, 어린이공원 199개소, 498,525.5㎡, 근린공원 82개소, 6,707,841.7㎡, 역사공원 1개소, 131,972.0㎡, 문화공원 3개소, 60,683.6㎡, 수변공원 10개소, 360,182.1㎡, 체육공원 2개소, 22,565.2㎡이다.

<표 3-1> 수원시 공원 현황

구분	계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생활권공원	소계	304	7,234,082.3	57	819,697.5	118	1,174,021.6	42	1,056,096.5	87	4,183,366.8
	소공원	23	27,715.1	3	7,524.3	17	16,786.6	1	1,603.5	2	1,800.7
	어린이공원	199	498,525.5	42	103,074.6	67	156,575.5	34	79,883.6	56	158,991.8
	근린공원	82	6,707,841.7	12	709,098.6	34	1,000,695.5	7	974,609.4	29	4,022,574.3
주제공원	소계	16	575,402.9	1	39,000	13	372,749.9			2	163,653
	역사공원	1	131,972.0							1	131,972.0
	문화공원	3	60,683.6	1	39,000.0	2	21,683.6				
	수변공원	10	360,182.1			9	328,501.1			1	31,681.0
	체육공원	2	22,565.2			2	22,565.2				
총계	320	7809485	58	858697.5	131	1546808	42	1056097	89	4347020	

자료 : 수원시 공원관리과 내부자료(2017.5기준)

공원종류별 평균면적은 소공원 1,205㎡, 어린이공원 2,505㎡, 근린공원 81,803㎡, 주제공원 35,963㎡이다.

<표 3-2> 수원시 공원 종류별 면적규모

구분	평균면적(㎡)	
-	23,796.32	
생활권공원	소공원	1,205
	어린이공원	2,505.15
	근린공원	81,802.95
-	35,962.68	
주제공원	역사공원	131,972
	문화공원	20,227.87
	수변공원	36,018.21
	체육공원	11,282.6

## 2) 소공원

수원시의 소공원 지정현황은 장안구 3개소, 26,427.1㎡, 권선구 17개소 16,786.6㎡, 팔달구 1개소, 1,603.5㎡, 영통구 1개소, 512.7㎡ 이며, 1개소 당 평균 조성면적은 1,201㎡이다.

<표 3-3> 소공원 현황

연번	공원명	소재지		면적(㎡)	주요시설	비고
	21개소			25,914.4		
	3개소	장안구		7,524.3		
1	60호 소공원	정자3동	836-5	3482.0	휴게쉼터	
2	61호 소공원	송죽동	346-6	971.3	휴게쉼터	
3	송원공원	조원2동	912-2	3,071.0	휴게쉼터	
	17개소	권선구		16,786.6		
4	28호 소공원	권선2동	1367-14	1,104.8	휴게쉼터	
5	29호 소공원	권선2동	1367-26	1,030.3	휴게쉼터	
6	69호 소공원	권선2동	1352-65	489.0	휴게쉼터	
7	70호 소공원	권선2동	1354-67	477.9	휴게쉼터	
8	71호 소공원	권선2동	1345-69	523.2	휴게쉼터	
9	18호 소공원	오목천동	314-86	174.0	휴게쉼터	
10	51호 소공원	서둔동	382	1,479.3	휴게쉼터	
11	20호 소공원	금곡동	1115	671.1	휴게쉼터	
12	21호 소공원	금곡동	1134-4	269.0	휴게쉼터	
13	22호 소공원	호매실동	1354	739.6	휴게쉼터	
14	34호 소공원	호매실동	1413-4	454.4	휴게쉼터	
15	35호 소공원	금곡동	1064	421.6	휴게쉼터	
16	36호 소공원	호매실동	1392	5,567.8	휴게쉼터	
17	62호 소공원	금곡동	1090	339.6	휴게쉼터	
18	63호 소공원	호매실동	1347	515.0	휴게쉼터	
19	64호 소공원	호매실동	1136-2	1,051.3	휴게쉼터	
20	64호 소공원	세류동	198-6일원	1,478.7	휴게쉼터	
	1개소	팔달구		1,603.5		
21	16호 소공원	화서2동	767	1,603.5	휴게쉼터	
	2개소	영통구		1,800.7		
22	19호 소공원	밍포동	478	1,288	휴게쉼터	
23	10호 소공원	망포동	433-3	512.7		

자료 : 수원시 내부자료(2017.5)

<표 3-4> 소공원 시설현황

연 번	공원명	소재지	면적	시설현황								비 고
				1	2	3	4	5	6	7	8	
	21개소		25,914.4									
	3개소	장안구	7,524.3									
1	60호 소공원	장안구 정자3동 836-5	3482㎡	●	●							
2	61호 소공원	장안구 송죽동 346-6	971.3㎡									
3	송원공원	장안구 조원2동 912-2	3,071㎡	●	●	●	●	●	●			
	17개소	권선구	7,524.3									
4	28호 소공원	권선구 권선2동 1367-14	1,104.8㎡	●			●					
5	29호 소공원	권선구 권선2동 1367-26	1,030.3㎡	●		●	●				●	
6	69호 소공원	권선구 권선2동 1352-65	489㎡				●				●	
7	70호 소공원	권선구 권선2동 1354-67	477.9㎡								●	
8	71호 소공원	권선구 권선2동 1345-69	523.2㎡									
9	18호 소공원	권선구 오목천동 314-86	174㎡	●			●				●	
10	51호 소공원	권선구 서둔동 382	1,479.3㎡	●	●		●				●	
11	20호 소공원	권선구 금곡동 1115	671.1㎡	●			●					
12	21호 소공원	권선구 금곡동 1134-4	269㎡	●								
13	22호 소공원	권선구 호매실동 1354	739.6㎡	●	●		●					
14	34호 소공원	권선구 호매실동 1413-4	454.4㎡	●			●			●		
15	35호 소공원	권선구 금곡동 1064	421.6㎡	●			●					
16	36호 소공원	권선구 호매실동 1392	5,567.8㎡	●	●		●					
17	62호 소공원	권선구 금곡동 1090	671.1㎡	●			●					
18	63호 소공원	권선구 호매실동 1347	515㎡		●					●		
19	64호 소공원	호매실동 1136-2	1,051.3㎡									
20	64호 소공원	권선구 세류동 198-6	1,478.7㎡	●	●	●	●	●			●	
	1개소	팔달구	7,524.3									
21	16호 소공원	팔달구 화서2동 767	1,478.7㎡	●	●	●	●	●			●	
	2개소	영통구	7,524.3									
22	19호 소공원	영통구 망포동 478	1,288㎡	●	●			●				
23	10호 소공원	영통구 망포동 433-3	512.7㎡	●	●	●	●	●			●	

1.벤치, 2.파고라, 3.운동시설, 4.보안등, 5.보안카메라, 6.음수대, 7.쓰레기통, 8.안내표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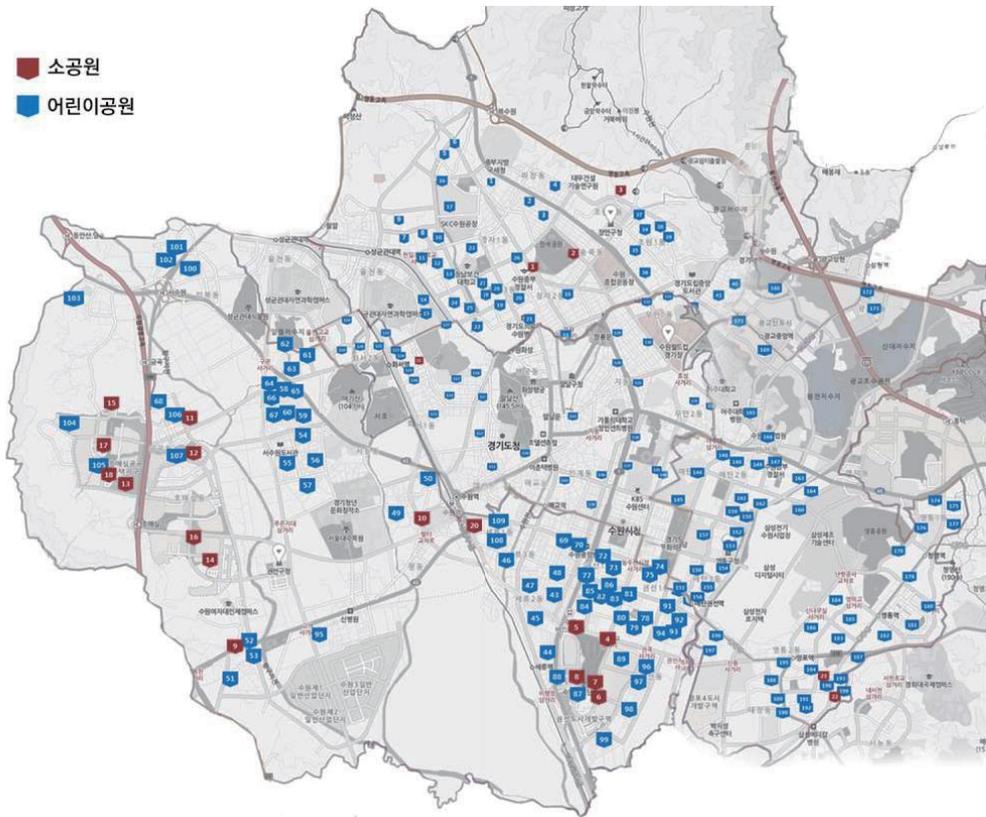
연번	공원명	소재지		면적(㎡)	주요시설									비고	
					1	2	3	4	5	6	7	8	9		
38	조원	조원1동	860	2,500.0	●	●	●								
39	금당	조원1동	862	2,150.0	●	●									
40	연무	연무동	214-6	1,621.0	●	●						●			
41	창훈	연무동	237-15	1,630.4	●	●						●			
42	쭉박산	연무동	252-1	1,667.5	●	●						●			
	67개소	권선구		156,575.5											
43	문화	세류2동	1106	1,487.8	●	●						●			
44	신곡	세류2동	1156	1,495.8	●	●									
45	재간령	세류2동	1135	1,496.6	●	●	●					●			
46	버드내	세류2동	463-1	2,003.6	●	●						●			
47	한주	세류2동	1020-12일원	3,175.0	●	●									
48	장승배기	세류3동	1086	1,497.1	●	●									
49	벌터	서둔동	27-114	1,132.0	●	●									
50	한터	서둔동	372 일원	2,310.0	●	●	●								
51	오목천	오목천동	945	4,300.3	●	●									
52	오색	오목천동	953	750.0	●	●									
53	여우별	오목천동	958	755.1	●	●									
54	탑마루	탑동	764	1,591.3	●	●									
55	푸른지대	탑동	829	1,601.0	●	●									
56	앞새	탑동	855-9	1,533.1	●	●									
57	탑골	탑동	866	1,559.2	●	●									
58	은하수	구운동	487	1,723.1	●	●		●							
59	칙칙폭폭	구운동	510	2,182.1	●	●	●								
60	하구운	구운동	524	1,995.8	●	●		●				●			
61	단온	구운동	892	1,860.0		●									
62	세모	구운동	895	2,448.0	●	●	●								
63	꽃길	구운동	910	1,657.0	●	●									
64	드림	구운동	933	906.8	●	●									
65	하늬	구운동	941-1	2,143.0	●	●	●								
66	별솔	구운동	955	1,700.0	●	●	●								
67	사랑	구운동	966	2,375.0	●	●									
68	풀잎	금곡동	66-1일원	1,837.0	●	●	●								
69	장교둑	권선1동	980	2,068.0	●	●		●							
70	장대산	권선1동	985	1,499.0	●	●						●			
71	중앙	권선1동	946	1,499.1	●	●									
72	무지개	권선1동	1035-2	2,367.7	●	●									
73	세곡	권선1동	1045	1,496.5	●	●									
74	용화출	권선1동	1163-7	1,501.0	●	●									
75	효정	권선1동	1232	2,529.8	●	●		●							
76	솔밭	권선1동	1239	1,843.2	●	●		●							
77	전원	권선2동	1059	1,490.3	●	●									
78	꽃잎	권선2동	1273	1,624.7	●	●		●							
79	선일	권선2동	1275	2,856.9	●	●		●							
80	다솜	권선2동	1264	2,202.2	●	●		●							
81	우솔	권선2동	1261	1,649.7	●	●		●							
82	권선	권선2동	1185-2	2,974.4	●	●	●	●							
83	아우름	권선2동	1333	3,338.7	●	●		●							
84	다정	권선2동	1188-2	2,809.0	●	●	●	●							



연번	공원명	소재지		면적(㎡)	주요시설									비고	
					1	2	3	4	5	6	7	8	9		
126	네버랜드	화서2동	657	1,500.0	●	●	●								
127	힘찬	화서2동	744	1,670.7	●	●									
128	못골	지동	473	3,257.0	●	●	●	●				●			
129	아낌없이주는나무	우만1동	487	3,959.3	●	●	●					●			
130	당산	우만1동	500	5,379.9	●	●	●					●			
131	청록	우만1동	560	2,275.4	●	●						●			
132	소만	우만1동	300-4	2,000.1	●	●	●								
133	작은새	우만1동	301-2 일원	2,772.8	●	●									
134	솔밭산	우만2동	72-1	3,693.0	●	●	●	●				●			
135	장고개	우만2동	51-1일원	3,507.0	●	●									
136	반달	인계동	973	4,665.5	●	●	●	●						●	
137	드라마센터	인계동	948	2,639.0	●	●	●								
138	미소	인계동	944	1,512.9	●	●									
139	장다리	인계동	998	1,498.9	●	●									
140	색동	인계동	384-1	2,400.0	●	●									
141	인도래	인계동	465-3	1,890.0	●	●									
142	정글	인계동	564-1일원	684.0	●	●	●								
143	미나리습터	지동	336	1,481.0	●	●									
	56개소	영통구		158,991.8											
144	매화	매탄1동	899	5,397.3	●	●	●								
145	청심	매탄1동	896	5,671.1		●	●								
146	무지개	매탄1동	101-16	1,616.2	●	●									
147	우정	매탄2동	1201	1,939.1	●	●		●							
148	미래	매탄2동	196-25	1,507.3	●	●						●			
149	산남	매탄2동	111-107	1,595.5	●	●						●			
150	참새	매탄3동	1166-2	1,502.3	●	●						●			
151	해성	매탄3동	1177	2,287.3	●	●	●					●			
152	푸름	매탄3동	1245	1,634.4	●	●									
153	매화	매탄3동	1259	2,025.7	●	●	●								
154	매여울	매탄3동	1275	2,312.2	●	●	●								
155	풀샘	매탄3동	1283	1,957.0	●	●	●								
156	그린나라	매탄3동	1281	2,135.6	●	●									
157	호원	매탄3동	1354	6,653.0	●	●									
158	마루터기	매탄4동	861	1,815.6	●	●						●			
159	웅달샘	매탄4동	209-25	1,518.6	●	●									
160	교통	매탄4동	1231-2	2,530.0	●	●									
161	산샘	매탄4동	205-32	1,940.1	●	●						●	●		
162	매미	매탄4동	1217-6	2,135.3	●	●		●							
163	먼내	원천동	463-1	1,523.0	●	●									
164	솔빛	원천동	549-3	3,230.0	●	●									
165	꿈틀이	원천동	581	1,602.0	●	●									
166	동물놀이	원천동	612	1,618.6	●	●									
167	다람쥐	이의동	1259-3	1,508.4	●	●									
168	물봉선	이의동	1311-2	1,747.9		●			●						
169	뽕뽕	이의동	1343	3,083.5	●	●									
170	고래등	이의동	1273-1	2,104.7		●			●						

연 번	공원명	소재지		면적(㎡)	주요시설									비고		
					1	2	3	4	5	6	7	8	9			
171	틴틴	이의동	1345	2,185.1	●	●										
172	소꿉놀이	하동	965-8	2,133.3	●	●										
173	신호등	하동	978	1,835.2	●	●										
174	해오름	영통1동	948-5	3,824.7	●	●	●									
175	달래	영통1동	1053-3	4,220.7	●	●	●									
176	미로	영통1동	955-2	4,969.3		●	●	●								
177	달님	영통1동	1052-4	4,865.2	●	●	●									
178	푸른	영통1동	957-1	5,019.3	●	●	●									
179	단오	영통1동	1047-3	6,083.3	●	●								●		
180	수정	영통1동	1031	2,641.1	●	●										
181	으뜸	영통1동	1017	2,087.9	●	●							●			
182	풀잎	영통2동	988-3	8,360.4	●	●	●									
183	보리수	영통2동	970-2	6,947.2	●	●	●									
184	솔찬	영통2동	964-3	4,968.3	●	●	●									
185	박지성	영통2동	967-3	6,968.8	●	●	●									
186	한울	영통2동	972-4	5,919.7	●	●	●									
187	미리내	영통2동	987	1,781.4	●	●	●									
188	샘말	망포동	296-17	1,975.0	●	●										
189	방죽	망포동	383-3일원	2,135.0	●	●	●									
190	소담	망포동	544-13	907.0		●										
191	소문	망포동	724	1,846.8	●	●										
192	온누리	망포동	523-1	887.0	●	●										
193	수련	망포동	708	1,507.1	●	●										
194	당암	망포동	719일원	1,542.1	●	●										
195	망포	망포동	721	1,932.3	●	●										
196	동그라미	신동	927-2	1,527.0												
197	물빛	반정동	608	1,683.0												
198	우주	망포동	500-6	1.612												
199	숲속부엉이	망포동	713	2,034.9												

1.조합놀이대, 2.휴게쉼터, 3.운동경기장, 4.화장실, 5.물놀이시설 6.바닥분수, 7.노인시설, 8.보호수, 9.기타  
자료 : 수원시 내부자료(2017.5) 수정



<그림 3-2> 수원시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위치도











## 2. 공원녹지의 조성·관리 현황

### 1) 공원관련 조직·업무 현황

수원시는 공원관리 전문부서로서 공원녹지사업소를 설치하여 직접 공원 조성·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생태공원과는 공원행정, 생태서비스, 공원조성,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녹지경관과는 녹지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인가, 점용허가(시설녹지, 공공공지, 광장), 시민의 숲 조성, 가로수 계획 수립 및 조성, 관리 등을, 공원관리과에서는 근린, 어린이, 소공원의 시설 유지관리와 청결관리, 시설물, 조경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3-3> 수원시 공원녹지관련 조직도

<표 3-7> 수원시 공원 조성·관리 업무현황

구분	담당업무
생태공원과	· 공원행정업무/ · 공원조성/ ·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 수원수목원 조성/ · 생태서비스 · 미조성공원 보상, 미조성공원 점용허가/ · 유아숲 체험원 운영
녹지경관과	· 녹지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인가/ · 점용허가(시설녹지, 공공공지, 광장) · 테마꽃길, 팔색길, 노송지대 관리/ · 시민의 숲 조성 · 학교 숲 조성, 나무은행 운영, 테마거리 및 소규모 녹지 조성 ·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 · 숲길 체험지도, 광고산 등산안내도 · 등산로유지관리, 산림보전/ ·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업무 / 가로수 종합계획 수립
공원관리과	· 공원점용허가/ 공원사랑시민참여단 및 시민텃밭 운영 · 근린, 어린이, 소공원 전기시설/수경·놀이시설 관리 · 근린, 어린이, 소공원 조경관리 및 청결관리 / 시설물관리 · 불법행위 단속 / · 민간위탁 프로그램 운영

## 2) 공원관리 예산현황

생활권 공원의 관리항목은 녹지대관리, 청결관리, 시설유지관리(수경시설물, 조경시설물, 토목시설물, 전기시설물, 공원등, 화장실 중수시설, 불법행위정비, 공원 시설물 공사 폐기물 처리, 도색, 어린이공원 시설물, 체력단련기구, 휠체어리프트), 녹지정비(녹지정비 101개 공종, 수목식재, 소나무수목 병해충 방제 및 수세회복 등, 병해충 방제, 수목 외과수술), 공원 금지행위계도단속으로 구성된다.

<표 3-8> 2017년 도시공원 관리 공사 및 용역 추진현황

단위 : 천원

근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비 용	
녹지대관리		4,135,754	
청결관리		6,832,481	
시설유지관리	수경시설물 유지관리	250,978	2,262,439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57,000	
	토목시설물 유지관리	375,000	
	전기시설물 관리	274,530	
	공원등 관리	309,000	
	화장실 중수시설 유지관리	15,035	
	불법행위정비	144,576	
	공원 시설물 공사 폐기물처리	40,000	
	조경시설물 도색	52,000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180,000	
	체력단련기구 유지관리	50,000	
	휠체어리프트관리	1,320	
녹지정비	녹지정비 101개 공종	190,000	1,009,136
	수목식재	129,151	
	소나무 병해충방제 및 수세회복 등	87,000	
	수목병해충 방제 및 수세회복 등	128,000	
	병해충 방제 수목 외과수술	474,985	
공원금지행위 계도 단속	공원금지행위 계도 단속 (개목줄미착용 등)	437,976	
합 계		14,677,786	

소공원과 어린이공원만을 보면, 시설유지관리(어린이 시설물, 조경시설물, 전기시설물, 공원등), 병해충 방제 수목 외과수술, 녹지대관리, 청결관리로 관리항목이 줄어든다.

이중 지역주민에게 위탁을 주기 용이한 항목은 녹지대관리와 청결관리이다.

생활권 공원관리에 들어가는 총 유지비용(2017년기준)은 약 146.8억원이며, 비교적 규모가 작은 소공원과 어린이 공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30.1억이다.

이중 지역 주민에게 위탁을 주는 것으로 상정될 수 있는 녹지대 관리와 청결관리의 비용 규모는 약 23.8억 규모로 대상관리항목 전체예산비용의 78.8%에 달한다.

<표 3-9> 2017년 도시공원 관리 공사 및 용역 추진현황

소공원, 어린이공원		비 용 (천원)	
시설유지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180,000	538,000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190,000	
	전기시설물 관리	84,000	
	공원등 관리	84,000	
병해충 방제 수목 외과수술		100,000	
녹지대관리		655,924	2,376,061
청결관리		1,720,137	
합 계		3,014,061	

### 3) 관리위탁 현황

소공원 및 어린이 공원에 대한 위탁현황을 보면 민간위탁은 청결관리(청소)에 국한하여 위탁하고 있으며, 8개 단체가 34개 공원을 위탁하고 있다.

<표 3-10> 소공원 · 어린이공원 용역현황(전체)

구분	공원수 (구성비율)	업체/ 단체	면적(㎡) (구성비율)	비용(천원) (구성비율)	개소 당 비용(천원)	1㎡당 비용
위탁	1523 (97.8%)	28	3,075,292 (98.0%)	2,850,483 (94.6%)	1,871.6	0.9
민간위탁	34 (2.2%)	8	61,257 (2.0%)	163,578 (5.4%)	6,291.5	2.7
합계	1557	36	3,136,549	3,014,061	민간위탁/위탁	
					336.2%	300.0%

1523개 공원을 28개의 전문용역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고, 민간위탁은 8개 단체에 의한 34개 공원으로, 민간위탁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원수는 2.2%에 그치고 있고 면적기준으로는 2.0%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민간위탁 업무내용도 청결관리(공원청소)에 국한되어 있다.

위탁비용면에서는 민간위탁이 오히려 단위비용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는 위탁업무내용에 따라 소요비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동일한 업무 내용으로 한정하는 경우 민간위탁이 오히려 소요비용이 저렴하다.

동일한 청결관리 사업만을 수행하는 업체와 민간위탁을 비교해 보면, 민간위탁이 개소당 위탁비용의 69.1%수준이며, 면적당 81.8%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전문용역업체는 1개 업체당 평균 28개소를 담당하며, 민간위탁은 4.13개소를 담당하여 규모의 경제면에서 오히려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단위비용이 훨씬 적게 소요된다.

〈표 3-11〉 소공원·어린이공원 용역현황(청결관리 단일사업 국한)

구분	공원수	업체	면적(㎡)	비용(천원)	개소 당 비용(천원)	1㎡당 비용(천원)
위탁	84	3*	178,342	584,832	6962.3	3.3
민간위탁	34	8	61,257	163,578	4811.1	2.7
민간위탁/ 위탁	-	-	-	-	69.1%	81.8%

※ 화장실 청소+ 청결관리 업무 업체 : 3개업체 106개소 공원 담당

### 3. 공원관리상의 과제

공원관리 업무영역 중 녹지대 관리와 청결관리는 대형장비나 특수기술이 요구되지 않고, 약간의 기술만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관련 기술습득도 큰 비용과 시간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에게 위탁이 가능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소공원과 어린이 공원에서 두 영역의 소요비용은 2017년 기준 예산인 약 30억의 78.8%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러나 실제 위탁현황을 보면 민간위탁은 업무영역이 청결관리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 비율도 면적기준 2%에 그치고 있다. 민관협력의 도시관리와 시민참여를 표방하는 수원시의 시책방향 측면에서도, 지역의 과제를 지역주민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지역단위 주민자치의 강화입장에서도 민간위탁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단위비용 면에서 민간위탁이 용역업체에 맡기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약 80%정도 수준으로 저감됨을 고려할 때 행정재정의 효율화 측면에서도 공원관리에 대한 민간위탁비율의 확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 제2절 수원시의 시민참여형 공원관리를 위한 노력

### 1. 정책의지 및 관련 사업

#### 1) 정책의지

수원시의 공원관리에 있어 시민참여 추진의지를 보면, 2012년6월 ‘수원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당해 법 제3조제3항에 “시장은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녹화 활성화와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12년 9월 수립된 ‘2020 수원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 내동네·내공원 가꾸기를 주제로 하여 중점추진사항은 이용안내 및 안전지도, 시설 및 쓰레기관리, 조경수 관리 및 자유참여 유도 등 아래와 같은 추진방향을 명시하였다.

- 공원순찰 및 공원이용객안내, 안전지도 및 청소년 계도를 수행
  - 공원시설물점검, 쓰레기 수거 등 공원시설관리를 추진
  - 공원내 조경수 전지·다듬기, 고사목제거 등 조경수 관리를 추진
  - 공원내 꽃가꾸기, 청소도구 지원, 애완동물 출입금지 캠페인 등 아름다운 공인가꾸기를 추진
  - 공원내 체육시설, 화장실 개·보수·증설, 조경수목식대 등 공원시설 자율참여 유도
- 상기 시민들의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자원봉사인정, 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 활동우수자 포상 등을 계획하였다.<sup>6)</sup>

#### 2) 실행사업

수원시에서 시행해온 시민참여형 공원관리 사업은 크게 행정이 직접 특정 단체에 민간 위탁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와 생태환경을 전문영역으로 하는 (재)수원 그린트러스트<sup>7)</sup>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보조금 사업방식의 2가지로 진행되고 있다.

##### (1) 민간위탁 : 청결관리

수원시에는 2017년 현재 규모가 작은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을 대상으로 이중 34개의 청결관리를 어르신 모임을 중심으로 봉사단체, 사회적기업, 지역공동체모임 등 8개 민간단체

6) 세부적인 실행계획은 마련되지 못하였다.

7) 2012.11.23. 경기도 설립허가, 시민생활권 녹지 확대사업과 관련 연구, 조사사업, 시민참여에 의한 공원, 녹지관리 확산과 시민교육활동 등을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공고2013.12.31.; 고유번호증부여 2016.3.18

가 심사를 통해 선정되어 심사를 통해 선정되어 위탁관리하고 있다.

### ① 사업배경

민간개발사업에 따라 기부채납되어 신규 인수하는 공원에서 소규모인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에 대해 2014년부터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위탁사업이 추진되었다. 최근 어린이공원에 경로당 시설이 함께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본 사업을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연동한 이유이다.

### ② 운용현황

구역을 나누어 공원별로 민간위탁단체를 모집함으로써 해당 공원 인근의 단체가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어르신일자리 만들기의 목적이 함께 가미되어 추진된 사업으로 경비산정 시 임금계산은 공원 당 2명이 2시간/일 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산정하였다.

<표 3-12> 어린이공원, 소공원 청결관리 민간위탁 현황(2017)

공원명	위 치	면적 (㎡)	유 지 관 리				비고
			주체	관리주체 선정방법	관리 시기	업무 내용	
선재미 어린이공원	화서2동 678-1	1,578	경로당	심사	연중	청결 관리	
동말 어린이공원	화서1동 184-58	1,278	사회적기업				
교동 어린이공원	교동 45	1,910	금빛봉사회				
매여울어린이공 원 등 8개소	영통구 내 어린이·소공원	15,939	영통시니어 자원봉사대				
정자어린이공원 등 9개소	장안·권선구 내 어린이·소공원	10,903	금빛봉사회				
별빛어린이공원 등 7개소	권선구 내 어린이공원	17,167	(사)대한노인회 수원시 권선지구회				
기차놀이어린이 공원 등 3개소	권선구 내 어린이·소공원	5,205	(사)한국곰두리봉 사회 중앙회				
제22호 소공원 등 4개소	권선구 내 소공원	7,277	칠보어울림 공동체				

기존 용역업체는 8시간/일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통상 위탁비용에 비해 비용절감 효과가 높다. 다만, 1일 2시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지정 시간 이외의 시간에 현장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동네 어르신 및 봉사단체가 관리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민원감소의 개연성이 있다. 이에 대해 해당 단체

들은 시간비용을 고려한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위한 자구책으로 복수의 공원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③ 운용특징

민간위탁단체 선정 심사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3> 어린이 공원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 심사 기준표

(수원시, 2017.5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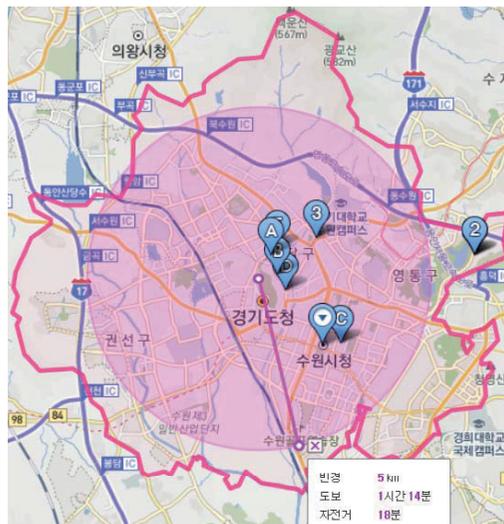
평가항목	선 정 기 준		배점기준	
	평 가 내 용			
위탁자평가 80점	위탁사업체의 주된 기능과 어린이 공원 민간위탁사업과의 적합성	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단체 인지 여부	40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사업내용 및 세부계획 수립 내용 의 적절성 여부	30	
	관리대상지와 수탁자 소재지와의 접근성	관리대상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 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능 여부	5km미만	10
위탁수행 능력평가 10점	회원수 보유 수준	· 원활한 업무수행 가능 여부 · 보유인원 문제로 인한 단체 운영 과 위탁사업 동시 수행 시 업무공 백 우려 여부	41명이상	5
			21명-40명	3
	공공기관 포상실적	공공기관 관련부서와의 상호협력 관계 평가	20명이하	1
			5건이상	5
			1건-4건	3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 15점	공원관리과 외 최근 3년간 유사사 업 수행 실적	사업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에 유동적인 대처 가능여부	없음	1
			5건이상	5
	3건이상		3	
	2건이하		1	
	평가 상		5	
평가 중	0			
평가 하	-5			
합 계			100	

심사점수 배점을 보면 심사대상단체가 본 사업 취지에 적합한지가 80점, 능력은 있는지  
가 5점 행정과의 관계가 15점으로 구성된다. 사업 수행능력은 배점이 가장 낮으나 본 사업  
이 단순 청결유지사업으로 특별한 수행능력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배점구조를  
갖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점수의 변별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위탁자 평가항목의 사업목적 부합성과  
사업계획서의 적절성은 본 사업 성격상 판단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업체인 경우 변별력을 보이기 어렵다.

또한, 대상지와와의 거리는 10점을 배점하며, 대상지와 인접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 관리대상지와 수탁자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른 점수 차등 배분으로 5km와 10km를 기준으로 3분위 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시의 직경은 광고산이나 칠보산등의 지역을 제외한 도시인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반경 5km이내에 거의 들어온다. 최고점수인 5km는 실제로는 각각의 구(區)의 경계를 넘어서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대상 어린이 공원 주변 단체를 위탁대상단체로 한다고 할 때, 구 전체 길이가 5km를 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대상지를 포함하는 행정동의 단체라도 특별히 유리하지 않은 기준으로 변별력이 없다.



<그림 3-4> 수원시내 반경 5km 범위

결국 위탁자평가가 80점을 제외한 나머지 20점으로 대상자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때 회원수 보유수준에 따른 5점 배점은 결과적으로 20점을 기준으로 적지 않은 비율(25%)을 차지한다.

한편, 대상 단체의 평소 행정과의 관계는 매우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유사사업 경험에 따른 배점은 10점으로 이는 기존 민간위탁을 수행하는 단체이외의 신규 단체의 진입을 매우 어렵게 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공원관리과 위탁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배점은 5점이나, 평가하의 경우 -5점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0점이며 변별력 면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1개 공원씩 개별적으로 관리단체를 모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선정된 활동단체가 계속적으로 새로운 공원을 모두 위탁받아 수행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sup>8)</sup>

8) 다만, 기존 단체가 주변 공원을 지속적으로 위탁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역내 한정된 인력자원, 정보전달의 편중, 그리고 주민간 관계의식 등이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심사기준 자체를 보면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보완 개선될 점이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사업이 어린이 공원의 청결유지로 특별한 기능이나 기술이 요구되지 않으며, 특히 어르신일자리 사업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할 때 이러한 기준은 일정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심사기준은 향후 지역주민에 의한 공원관리를 고민하는 경우에는 가부기준과 점수배점 기준을 나누고, 점수배점에 있어서는 해당 공원의 주된 사용자인 주변 주민들이 관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재검토, 설정되어야 한다.

## (2) 수원 그린트러스트 협력사업

수원 그린트러스트는 민관협력 시민참여녹색수원, 지역공동체 복원공간·공원활동 시민참여 녹색거버넌스 구축강화, 관리예산절감·수요자 중심관리라는 4개 활동목표를 가지고 시민참여 공원녹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6년도 기준 진행한 협력사업은 다음과 같다.

- 가로수정원사 봉사단 : 가로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여 울창한 가로 녹지축구를 목표로 생활주변 가로수 생육 실태파악·도움·가로수정원사 활동봉사
- 수원팔색길 시민이용 활성화 : 수원팔색길 시민관심증진, 이용확대를 위한 팔색길 도보 체험답사 및 답사지도
- **공원사랑시민참여단** : 시민들이 스스로 공원을 가꾸고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 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주인의식 향상
- 청소년 공원지킴이 : 공원 생태자원을 활용한 청소년, 어린이 생태적 감수성증진, 사계절 공원생태계의 변화 체험 및 모니터링 자료축적 및 해당 활동을 통한 청소년 공원지킴이 육성, 지원
- **도시공원 시민공동체 텃밭** :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도심 속 텃밭활동을 통해 세대 통합, 주민화합에 기여하며, 텃밭 수확물 기부나눔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소통 거점공간으로서의 도시공원 역할 활성화
- 미래세대 녹색체험 ‘수원 녹색터’ : 어린이집 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경생태보호 실천체험을 지원하며, 재능·물품기부, 나눔 활성화 토대를 마련
- 공원녹지 민·관·학 합동워크숍 : 공원녹지 관련 민·관·학 거버넌스 지속발전 협력활동 토대마련, 학습, 답사, 토론 등을 종합적 문제의식 고양
- 공원녹지분야 시민참여현황 조사연구 : 공원녹지분야 시민참여정책 사업발굴 및 기존 사업간 협력 및 효율화 방안 마련

이중, 민관협력의 공원관리적 관점에서 관계되는 사업을 보면, 공원사랑 시민참여단과 도시공원 시민공동체 텃밭을 들 수 있다. 다만, 도시공원 시민공동체 텃밭의 경우 지역 내 누구에게나 공개되고 개방되는 공간인 공원을 특정인에게 점용한다는 점에서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공원에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된다.

한편, 가로수 정원사 봉사단 활동은 공원관리 활동에 대한 지원활동의 가능성이 있어 연계 추진도 고려해 볼 만하다.

### (3) 기타

수원시는 공원관리와 관련한 직접 사업이외에도 조경가드너 양성교육, 찾아가는 조경특강 등을 통해 시민들의 공원녹지 관리 관련 역량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공원관리에 있어 민관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최근(2017.7.14.발대식) 구성된 한일타운 조경관리 두레공동체는 수원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와 별도로 주민들의 자생적인 조경관리조직 사례이다.

한일타운은 1999.8월 준공된 58개동 5,282세대가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이다. 한일타운을 관할하는 조원2동 주민센터는 해당 단지와 연결하여 있으며, 평소 조경에 관심이 많았던 동장<sup>9)</sup>은 한일타운을 자주 둘러보면서 수목 등 조경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을 느끼고, 이를 아파트입주자 대표 등 지역주민들과 함께 논의하였다.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는 아파트 거주민 중 조경전문가(업체 대표)도 있어 그를 중심으로 실행방안과 역할을 논의하고 해당 활동의 취지와 회원모집내용을 단지 내에 공고(10일간)한 결과 일반인 20명 학생 15명이 동참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림 3-5〉 한일타운 조경관리 두레공동체 활동 모습

9) 당시 조원2동장 오00은 현재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2017년 8월 21일 해당 활동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감을 얻어 아파트 자생단체로 등록<sup>10)</sup>하였다.

현재, 매월 3째 주 목요일 단지를 둘러보며 수목 등의 상황을 확인하고 나무수종 및 특성, 전기작업 등 조경기술에 대한 학습활동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수목관리를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내 조경 관리 전반에 대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본 사례는 주민들의 생활에 가장 가까운 일성행정인 동행정이 계기를 만들고 이에 공감하는 주민들이 이의 실행을 도모하는 민관협력의 모범사례로 향후 그 활동이 기대된다.

## 2. 공원사랑 시민참여단

### 1) 사업목적

2012년부터 추진되어 온 ‘공원사랑 시민참여단’ 사업은 생활 주변 공원을 시민들이 스스로 가꾸고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공원별로 공원사랑시민참여단(자원봉사)을 모집·운영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주인의식을 향상시키고 공원리더로 성장하는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2) 활동개요

수원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되어, 1년 주기로 공원사랑 시민참여단을 신규로 구성, 발족하여 진행된다. 주로, 청소년문화공원, 서호꽃피공원, 호매실 물향기공원, 서호시민화단 등을 대상으로 공원별 운영진을 구성하고 자율적 활동을 지원하며, 교육연수활동을 통해 시민단 기능향상과 녹색봉사에 대한 홍보 및 공감대 확대에 노력한다. 또한, 연말 공원사랑시민참여단 활동보고회를 개최하고 참여자 포상 등도 실행한다.



<그림 3-6> 공원사랑시민단 활동모습(청소, 현장강좌, 간담회, 홍보모집)

10) 등록된 자생단체의 경우 아파트관리규약에 의거 500만원/년이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지원된다.

〈표 3-14〉 공원사랑 시민단 2016년도 주요 활동내용

#	날짜	장소	내용				인원×시간	
			홍보, 교육		공원관리활동			
1	02.23(화)	청소년문화공원	활동안내				20명×2시간	
2	03.08(화)	청소년문화공원	활동안내				20명×2시간	
3	03.15(화)	청소년문화공원			강좌	화단정비	10명×2시간	
4	03.25(금)	수원박물관 앞		행사	강좌	청소	14명×3시간	
5	03.29(화)	청소년문화공원					17명×2시간	
6	03.31(목)	공원녹지사업소	활동안내				20명×2시간	
7	04.14(목)	서호꽃피공원	활동안내				9명×2시간	
8	04.14(목)	물향기공원	활동안내		강좌	청소	7명×2시간	
9	04.19(화)	청소년문화공원				청소	20명×2시간	
10	04.22(금)	청소년문화공원				청소	39명×2시간	
11	04.27(수)	만석공원					11명×2시간	
12	04.29(금)	서호꽃피공원			강좌	조형물	3명×4시간	
13	05.05(목)	만석공원		행사			4명×4시간	
14	05.07(토)	광교공원		행사	강좌		13명×3시간	
15	05.10(화)	서호시민화단				보수	11명×2시간	
16	05.14(토)	서호시민화단				예-제초	2명×2시간	
17	05.17(화)	만석공원 청소년문화공원			강좌	청소	15명×2시간	
18	05.21(토)	서호시민화단				청소	예-제초	2명×2시간
19	05.27(금)	호원공원			문화강좌		26명×2시간	
20	06.07(화)	청소년문화공원					15명×2시간	
21	06.12(일)	서호시민화단				청소	예-제초	2명×2시간
22	06.16(목)	호매실, 물향기공원					15명×5시간	
23	06.17(금)	서호시민화단			문화강좌	정비	2명×2시간	
24	06.21(화)	청소년문화공원				청소	17명×2시간	
25	06.28(화)	일월공원					25명×2시간	
26	07.05(화)	공원녹지사업소	토론회				50명×2시간	
27	07.13(수)	서호시민화단			문화강좌	예-제초	4명×2시간	
28	07.19(화)	청소년문화공원			문화강좌		8명×2시간	
29	07.26(화)	청소년문화공원				청소	10명×2시간	
30	08.09(화)	서호꽃피공원				청소	예-제초	2명×2시간
31	08.10(수)	물향기, 청소년문화공원					급수	2명×4시간
32	08.11(목)	서호시민화단			출장강좌	화단보수	2명×2시간	
33	08.19(금)	철보고등학교			출장강좌		14명×2시간	
34	08.26(금)	철보고등학교					14명×2시간	
35	09.01(목)- 09.13(화)	물향기공원				청소	아치제작 3명×13일×2 시간	
36	09.03(토)- 09.04(일)	서호시민화단			문화강좌	예-제초	3명×2일×4 시간	
37	09.08(목)	물향기공원					5명×2시간	
38	09.25(일)	호원공원	활동안내			청소	5명×2시간	
39	09.29(목)	서호공원			강좌		50명×2시간	
40	10.04(화)	청소년문화공원			강좌		14명×3시간	
41	10.06(목)	서호, 서호꽃피공원			강좌		13명×3시간	
42	10.07(금)	물향기공원				청소	22명×3시간	

43	10.09(일)	노송공원		행사	강좌			20명×4시간
44	10.11(화)	청소년문화공원			강좌			17명×3시간
45	10.12(수)	두레뜰공원			강좌			17명×3시간
46	10.13(목)	일월공원			강좌			10명×3시간
47	10.14(금)	천리포수목원	답사			청소		33명×8시간
48	10.15(토)	서호공원		행사		청소		4명×2시간
49	10.16(일)	광고호수공원		행사	강좌			4명×3시간
50	10.17(월)	청소년문화공원			강좌			20명×3시간
51	10.18(화)	청소년문화공원			강좌	청소		60시간
52	10.20(목)	서호꽃미공원				청소		10명×2시간
53		만석공원		행사	강좌	청소		8명×2시간
54	10.21(금)	물향기공원				청소		5명×2시간
55	11.03(목)	서호꽃미공원			강좌		보수	4명×2시간
56	11.15(화)	청소년문화공원			강좌		아치정비	14명×2시간
57	11.16(수)	신구대학식물원	답사		강좌			43명×8시간
58	11.17(목)	서호꽃미공원			강좌			6명×2시간
59	11.29(금)	청소년문화공원				청소	보수	14명×2시간
60	12.03(금)	청소년문화공원			강좌		공원정돈	2명×2시간
61	12.13(화)	청소년문화공원			강좌			20명×2시간
62	12.20(화)	청소년문화공원						17명×2시간
63	12.27(화)	공원녹지사업소	보고대회					100명×2시간

공원사랑 시민단 활동에 대한 자체 사업평가

○사업성과

- 매주 정기 현장강좌와 꾸준한 활동: 도시공원에 대한 관심, 참여·봉사활동의식 증진
- 전문적인 체험교육활동을 통한 마을공원에 대한 한층 깊어진 관심과 관련지식
- 최초 단순봉사였으나 활동참여과정을 통해 재미와 관리주체로서의 주인 의식 길러짐
- 봉사활동시간인정, 현장사례발표와 봉사활동결과에 대한 감사 및 격려는 차년도 봉사활동실천 + 스스로의 봉사활동가치와 자존감의 고양 + 녹색봉사활동 만족도, 성취도 상승

○사업개선을 위한 제안

- 봉사이긴 하나 동일한 활동이 위탁 받는 경우와 차별대우 받지 않도록 방안 강구 필요.
- 활동참여의 용이성을 위해 옷을 갈아 입는 등의 공간 필요.
- [수원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에 의한 녹화계약 체결과정에 주민의견 청취 필요.
-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공원위원회와 공원녹지정책자문단의 활동과정과 회의 결과 등의 적극적인 시민공개 규정 필요.
- 공원녹지 업무 담당 인원 확대필요

자료: (재)수원그린트러스트, 2016, 공원녹지 시민참여현황 조사연구사업 결과보고서

(재)수원그린트러스트, 2016, 공원사랑 시민참여단 운영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 결과보고서

### 3. 시민참여형 공원관리 제도운용 과제

수원시는 공원관리에서의 시민참여현황을 보면 민간위탁이나 협력사업(보조금사업)이나 시민참여의 목표상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민관협력의 도시관리는 행정재정의 한계 속에서 공공시설 사용자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해당 시설의 이용효율과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 관리비용의 절감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근간은 해당 시설 사용자들의 참여이다. 즉, 소규모 공원관리의 경우에 있어 대상 사용자는 도시전체적 관점에서의 시민이 아닌 해당 공원 주변 주민이라는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해당 공원을 일상생활권역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시민은 정책적 관점에서 해당 시설 사용자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원 관리는 일상적 사용개연성이 높은 주변 주민을 중심으로 위탁하며, 업무로서 보다는 지역공동체 활동의 일환으로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만, 사회현실상 어르신일자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시민참여 공원관리에 대한 시민토론회에서도 지적된바와 같이, 동일 활동에 대해 어떤 경우는 돈을 받고 어떤 경우는 받지 않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지역사회봉사에 의한 의욕 고취는커녕 의욕을 상실시키는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한편, 공원관리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업무영역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민간위탁은 일자리로 접근하여 청소업무만 관리하고 있다. 공원사랑 시민단의 의견에서 보여지듯이 활동 과정을 통해 공원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경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익혀 나감으로써 개인의 역량강화는 물론 봉사활동에 대한 자긍신과 자의식강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무한 반복의 기계적 업무가 아니라, 조금씩 알아가며, 지식 및 기술정도에 따른 창의적 관리,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향후 제초 및 예초, 화초관리 및 관목의 전지·전정, 간단한 조경 시설물 설치 등 그 시민참여 관리업무영역을 확대해갈 필요가 있으며, 이의 확대에 있어서는 단순 업무위탁이 아니라 참여 주민들의 소양 및 기술증진을 위한 현장교육 활동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원관리에서의 시민참여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기 관점을 고려한 세부적인 제도운용 기준이 요구된다.

또한, 도시공원이외에도 공동주택 단지 내에도 자체적인 수목 및 조경 공간이 있다. 이에 대한 관리에도 이제 공공에서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 한일타운의 예에서 보여지듯 일선 행정에서 관련 계기를 만들고 이를 주민스스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 제3절 근린공원 거주민 인식조사

#### 1.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공원 인근 주민들에 의한 지속적이고 주체적인 공원관리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로, 해당 활동주체가 되는 거주민들의 공원관리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거주민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에서 공원관리와 주민참여형 공원관리제도는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 공원관리 : 나무 물주기, 쓰레기 줍기, 잡초제거, 나무전정, 화초식재, 놀이지도, 조경/환경학습 등
- 주민참여형 공원관리제도 : 주민들이 인근 공원을 직접 관리하고 행정이 관리도구 및 소정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설문조사의 내용은 통계처리를 위한 기초질문 이외에 이용빈도 등 주변 공원 이용에 관한 사항, 현행 공원관리에 대한 인식 및 공원관리에 참여에 대한 인식과 향후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대상 공원은 비교적 주민참여도가 높은 지역을 주민자치 시협의회장을 포함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원시 4개구(장안구, 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당 1개동씩 선정하였다.

조사대상 동은 송죽동, 지동, 매탄4동, 곡선동으로 선정되었으며, 해당 동의 주민자치위원의 협조를 얻어, 현황 및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동내의 대상 어린이 공원을 선정하고, 해당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해당 공원 주변 500m 이내 주민들에게 설문내용을 대면 설명 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7년 9월중 1주일간 진행하였다.

조사자에게 설문내용을 충분히 숙지시키고 대면방식을 통해 작성·수집되어, 회수된 설문지 407부<sup>11)</sup>(곡선동 109부, 지동 94부, 송죽동 99부, 매탄4동 105부)는 모두 유효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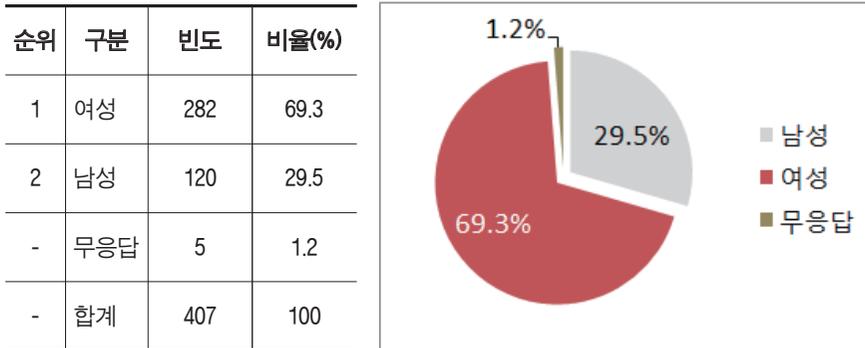
11) 조사요원으로 선발된 주민자치위원 4인에게 각 100부씩을 설문회수 목표로 설정하였고, 설문조사 진행중의 설문지 과분을 고려하여 5부의 여분을 더 포함하여 각 105부의 설문지를 전달하였다.

곡선동의 경우는 설문에 호응하는 주민수가 많아 자체적으로 복사를 하여 4부를 더 진행하였다. 이를 포함한 설문회수율은 96.9%(407/420)이고, 제외하는 경우 95.6%(403/420)이다. 설문분석은 이를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 2. 설문응답자 특성

### 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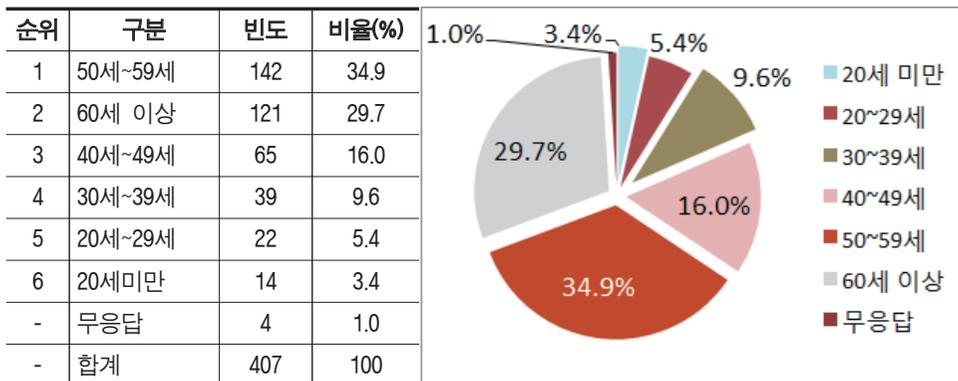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120명(29.5%), ‘여성’ 282명(69.3%)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다.



<그림 3-7> 설문응답자특성, 성별

### 2) 연령

응답자의 연령분포는 ‘50세~59세’가 전체 응답자중 142명(34.9%)로 가장 많고, ‘60세 이상’이 121명(29.7%), ‘40세~49세’가 65명(16.0%), ‘30세~39세’ 39명(9.6%), ‘20세~29세’ 22명(5.4%), ‘20세 미만’ 14명(3.4%), ‘무응답’ 4명(1.0%)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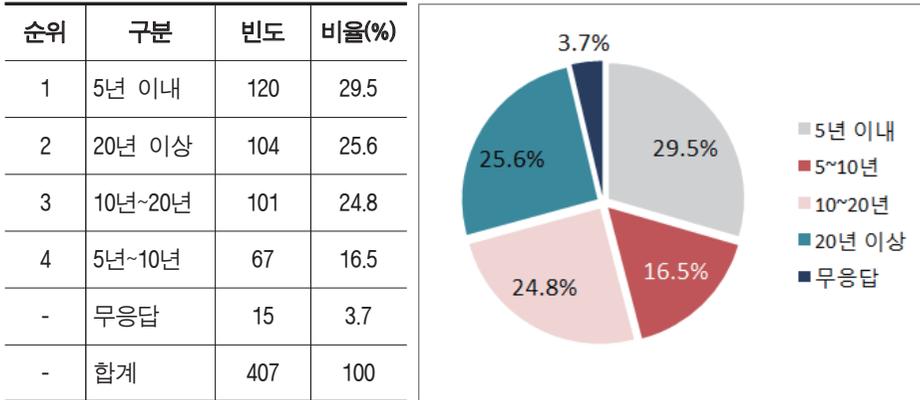


<그림 3-8> 설문응답자특성, 연령

### 3) 거주기간

거주기간에 대한 분포를 보면, 수원시 내에 거주기간이 ‘5년 이내’인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중에 120명(29.5%)로 가장 많았으며, ‘20년 이상’의 거주자가 104명(25.6%),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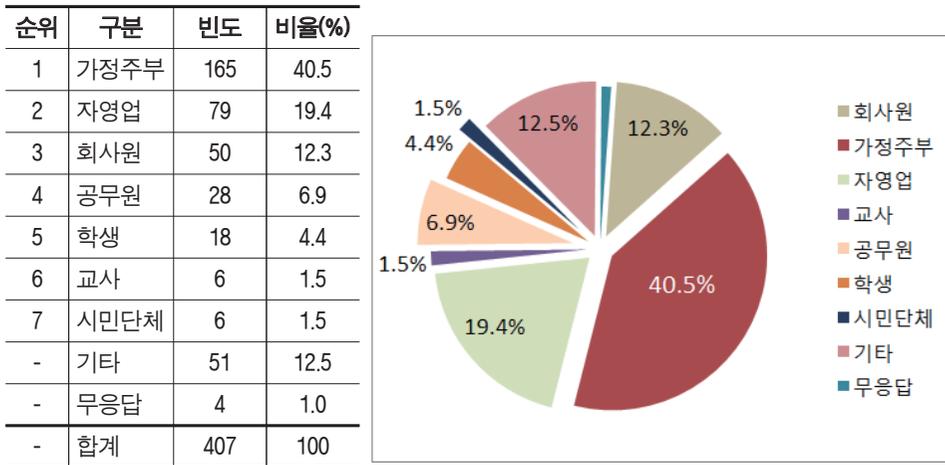
년~20년’ 응답이 101명(24.8%), ‘5년~10년’ 이 67명(16.5%). ‘무응답’ 15명(3.7%)이었다.



<그림 3-9> 설문응답자특성, 거주기간

#### 4) 직업

설문조사 참여자들의 직업 분포를 보면 ‘가정주부’가 165명(40.5%)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가 79명(19.4%), ‘회사원’ 50명(12.3%), ‘공무원’ 28명(6.9%), ‘교사’, ‘시민단체’ 6명(1.5%), ‘무응답’ 4명(1.0%)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자는 51명(12.5%)으로, 무직, 정년퇴직, 서비스직, 전문직 등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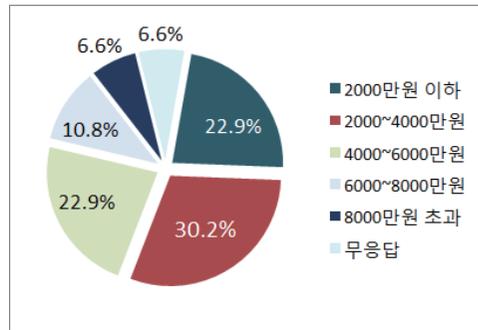


<그림 3-10> 설문응답자특성, 직업

#### 5) 소득수준

소득에 대한 분포를 보면, ‘2000만원~4000만원’이 123명(30.2%), ‘2000만원 이하’와 ‘4000만원~6000만원’ 응답이 각 93명(22.9%), ‘6000만원~8000만원’ 44명(10.8%), ‘8000만원 초과’, ‘무응답’이 각 27명(6.6%)이다.

순위	구분	빈도	비율(%)
1	2000만원~4000만원	123	30.2
2	2000만원 이하	93	22.9
3	4000만원~6000만원	93	22.9
4	6000만원~8000만원	44	10.8
5	8000만원 초과	27	6.6
-	무응답	27	6.6
-	합계	40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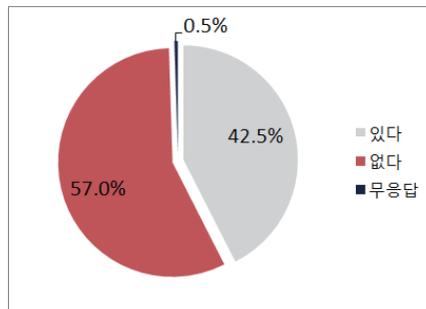


<그림 3-11> 설문응답자특성, 소득수준

### 6) 시민/주민단체 혹은 자원봉사단체 활동 경험

단체 활동 경험에 대한 응답으로는 ‘활동 경험이 있다’ 는 응답이 173명(42.5%), ‘활동 경험이 없다’ 는 응답이 232명(57.0%)으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다소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경험이 있다는 주민들의 단체 활동은 주로 새마을문고/새마을협의회(28명), 주민자치위원(25명), 통장(17명), 주민참여예산(10명), 부녀회(8명), 여성민방위대 및 방위협의회(7명), 마을발전소(7명), 안젤루스 만들어진 오케스트라, 선거관리위원, 방범기동순찰대, 바르게살기, 기타 봉사단 등이었다.

순위	구분	빈도	비율(%)
1	활동경험이 없다.	232	57.0
2	활동경험이 있다.	173	42.5
-	무응답	2	0.5
-	합계	40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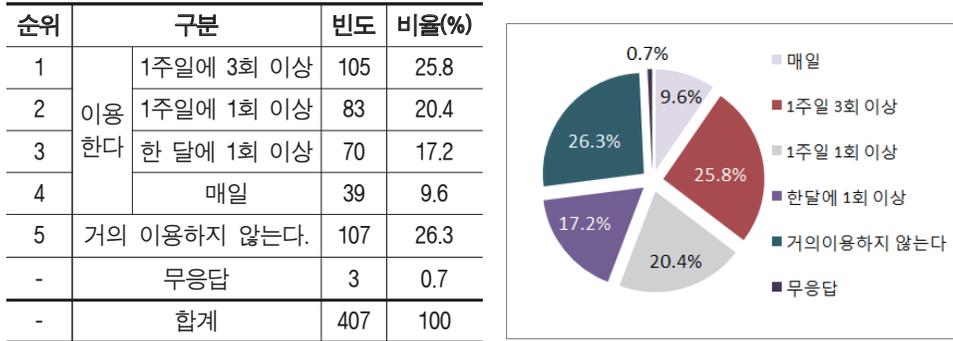
<그림 3-12> 설문응답자특성, 단체활동 경험유무

## 3. 공원관리에 대한 주민인식

### 1) 거주지 인근공원의 이용

먼저, 거주지 인근에 있는 공원의 이용 빈도에 있어서는 이용한다는 비율이 73%(297명),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는 응답이 26.3%로 나타났다. ‘무응답’ 은 0.7%(3명)이었다. 결과적으로 2/3이상의 주민이 일상생활 중에 공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공원인근 거주민의 반

수 이상(55.8%)이 1주일에 1회 이상 공원을 이용하고 있다. (주3회 이상 35.4%, 매일9.6%) 이용하는 주민(297명)중의 비율로 보면 76.4%가 1주일에 1회 이상 이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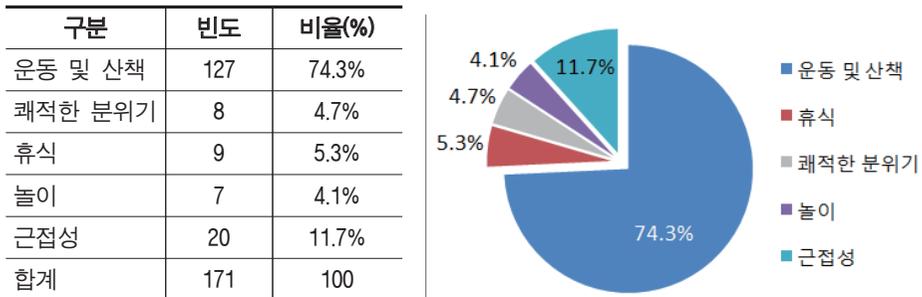


<그림 3-13> 거주지 인근 공원 이용 빈도

거주지 인근공원을 자주 이용하는 이유와 자주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하나를 선정하여 서술토록 한 것에 대해 총 289명이 서술<sup>12)</sup>하였고, 자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171명이, 자주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118명이었다.

자주 이용하는 이유로는 74.3%(127명/171명)가 운동 및 산책을 우선하였으며, 그 외에, 휴식 8.5%(17명, 쾌적한 공원분위기 포함), 놀이 3.5%(7명), 기타 0.5%(1명)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

한편, 이용에 있어 특정목적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가깝기 때문에 자주 이용한다는 내용도 10%(20명)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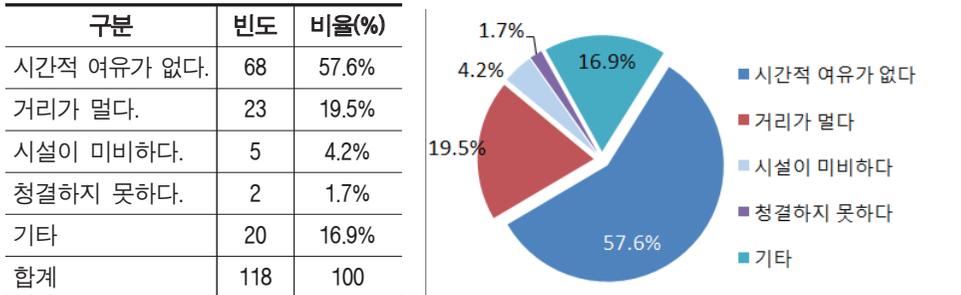


<그림 3-14> 거주지 인근 공원 이용 이유

거주지 인근공원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서술한 118명의 이유를 보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 57.6%(68명)로 가장 높았으며, 거리가 멀어서 잘 가지 않는다는 응답이 19.5%(23명),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이 4.2%(5명), 청결하지 못하다는 응답이 1.7%(2명), 기타

12) 289명 이외에 자주 이용하지만 공원내 정자에 노인분들이 쉬고 있어 아이들을 놀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서술한 1명에 대해서는 본 자료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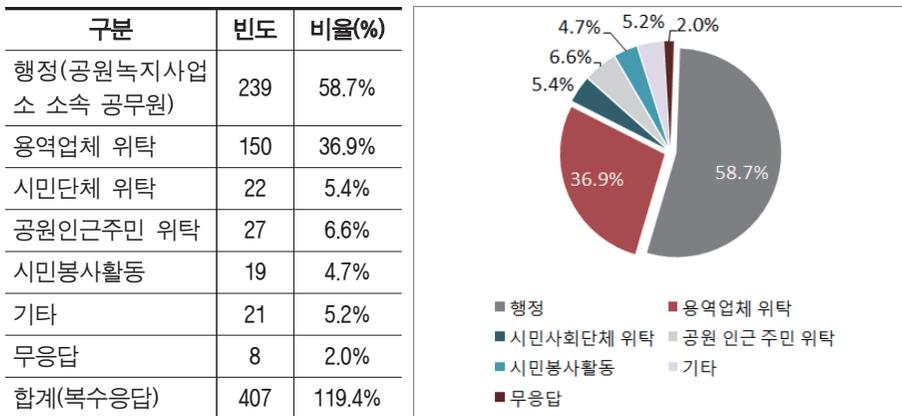
12.7%(20명)로 나타났다. 기타의 이유로는 벌레, 모기, 치안, 더워서, 이용소음, 집밖에 나가기가 싫어서, 체육활동을 하지 않아서 등이 있다.



<그림 3-15> 거주지 인근 공원 미이용 이유

## 2) 공원 관리의 수행주체 인식

현재 공원관리의 수행주체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정도(58.7%, 239명)가 ‘행정(공원녹지사업소 소속 공무원)’ 이라 인식하고 있었고, ‘용역업체에 위탁’ 하여 관리한다는 응답이 36.9%(150명)로 나타났다. 또한, ‘공원인근주민에게 위탁’ 하여 관리한다는 응답도 6.6%(27명), ‘기타’ 21명(5.2%), ‘시민단체 위탁’ 22명(5.4%), ‘시민봉사활동’ 19명(4.7%), ‘무응답’ 8명(2.0%)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6> 공원관리 수행 주체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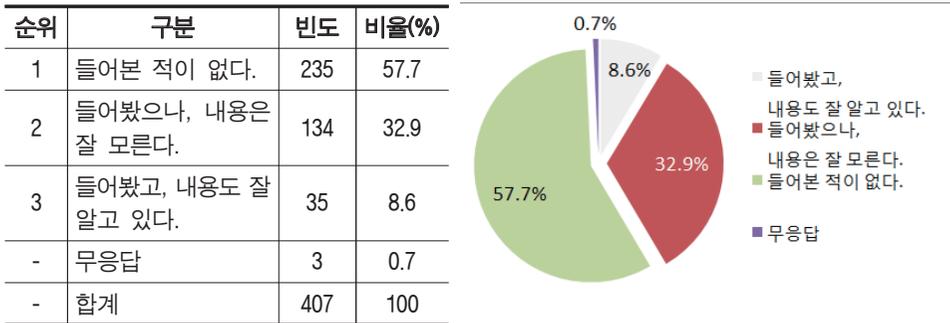
## 2. 공원관리에 대한 참여의식

### 1) 공원관리제도 인지 및 참여경험

주민참여형 공원관리제도(주민들이 인근공원을 직접관리 하고 행정이 관리도구 및 소정

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한 주민인지여부는 과반 수 이상(58%, 235명)이 ‘들어본 적이 없다.’ 고 답했으며, ‘들어봤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는 응답이 33%(134명)였다. ‘들어봤고 내용도 잘 알고 있다.’ 고 답한 주민들은 8%(35명)에 그치고 있다.

이는 수원시가 공원관리에서 민간참여를 강조하고는 있으나 실제 주민레벨에서의 공원 관리에 대한 홍보는 매우 부족하다 하겠다.



<그림 3-17> 공원관리 제도 인지정도

공원관리에 참여했던 경험에 대한 질문에 9.3%(38명)이 공원관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라고 답했으며, ‘참여한 적이 없다’ 는 응답이 89.9%(366명) 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원관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정도와 참여경험을 함께 볼 때, 주민참여를 통한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인지를 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제도의 홍보에 있어서는 별도의 홍보보다는 공원관리에 참여하는 과정과 연동되는 홍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림 3-18> 공원관리 참여경험

## 2) 공원관리 주민참여 의지

거주지 주변 공원관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35.9%(146명)가 ‘공원관리에 참여의사가 있다.’ 고 응답하였다. 앞서 확인한 참여경험 비율 9.3%와 비교해 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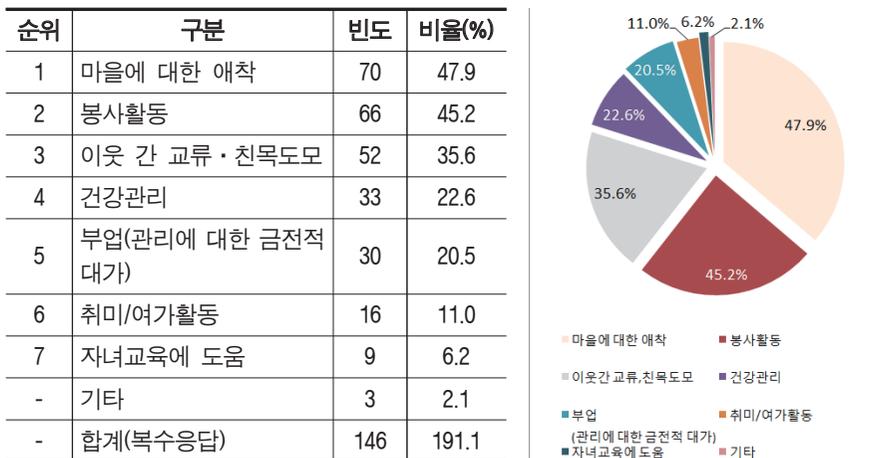
때, 향후 거주지 인근 공원관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9> 공원관리 주민참여 의지

공원관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의 절반정도가 마을에 대한 애착(47.9%, 70명), 그리고 봉사활동(45.2%, 66명)을 이유로 참여하고자 하며, 이웃 간 교류·친목도모 35.6%(52명), 건강관리 22.6%(33명), 부업(관리에 대한 금전적 대가) 20.5%(30명), 취미/여가활동 11.0%(16명), 자녀교육에 도움 6.2%(9명), 기타 2.1%(3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은 이용자로서의 책임, 자공심, 환경미화로 구성된다.

공원관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인근 주민들에 의한 공원관리가 지역 공동체활동으로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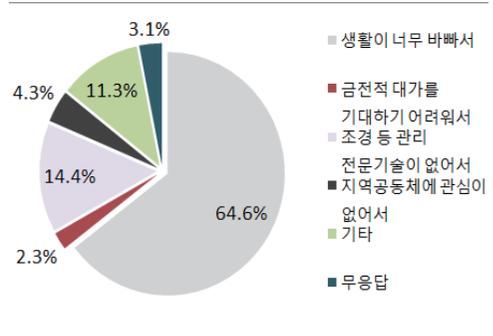
<그림 3-20> 공원관리 참여 이유

공원관리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주민들은 64.6%(166명/257명)이 ‘생활이 너무 바빠서’를 선택하였고, 14.4%(37명)이 ‘조경 등 관리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하였다. 그리고, ‘지역공동체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 4.3%(11명), ‘금전적 대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3%(6명)이었으며, 기타(11.3%, 29명)의 내용은 건강상태가 나

빠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동원하는 지 믿음이 없다는 등 개인적 사유와 행정에 대한 믿음부족 등을 이유로 하였다.

참여의사가 없는 주민 가운데, 조경 등 관리전문기술을 습득하게 되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이 14.4%에 달하기 때문에 조경관리기술의 학습과정을 포함하여 조경관리 전문역량을 기를 수 있는 주민참여제도의 기획이 요구된다.

순위	구분	빈도	비율(%)
1	생활이 너무 바빠서	166	64.6
2	조경 등 관리 전문기술이 없어서	37	14.4
3	지역공동체에 관심이 없어서	11	4.3
4	금전적 대가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6	2.3
-	기타	29	11.3
-	무응답	8	3.1
-	합계	25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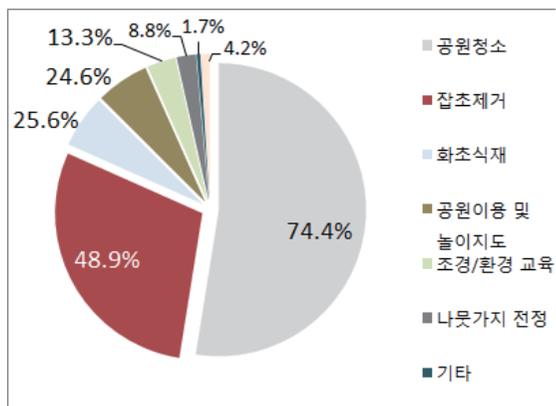


<그림 3-21> 공원관리 비참여 이유

### 3) 주민들에 의한 공원관리

공원관리에 참여하는 경우, 주민들에게 맡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활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현 공원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원청소’ 74.4%(303명)나 ‘잡초제거’ 48.9%(199명), ‘공원이용 및 놀이지도’ 24.6%(100명), 이외에도 ‘화초식재’ 25.6%(104명), ‘조경/환경교육’ 13.3%(54명), ‘나뭇가지 전정’ 8.8%(36명)등을 주민들이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순위	구분	빈도	비율(%)
1	공원청소	303	74.4
2	잡초제거	199	48.9
3	화초식재	104	25.6
4	공원이용 및 놀이지도	100	24.6
5	조경/환경 교육	54	13.3
6	나뭇가지 전정	36	8.8
-	기타	7	1.7
-	무응답	17	4.2
-	합계(복수응답)	407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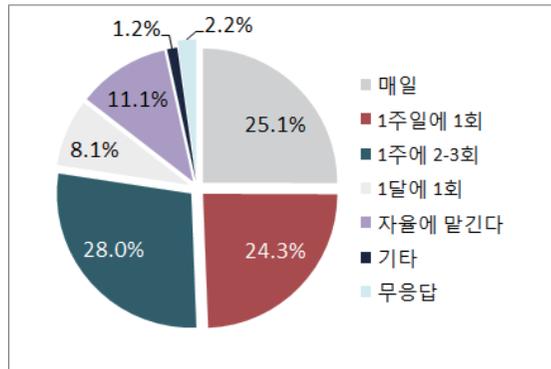
<그림 3-22> 공원관리 가능 활동

관리에는 일정의 전문기술이 요함을 주민들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들에 의한 공원관리는 어떤 빈도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매일’ 25.1%(102명), ‘1주일에 2-3회’ 28.0%(114명), ‘1주일에 1회’ 24.3%(99명)가 서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고, ‘자율이 맡긴다.’는 응답이 11.1%(45명), ‘1달에 1회’ 8.1%(33명) 정도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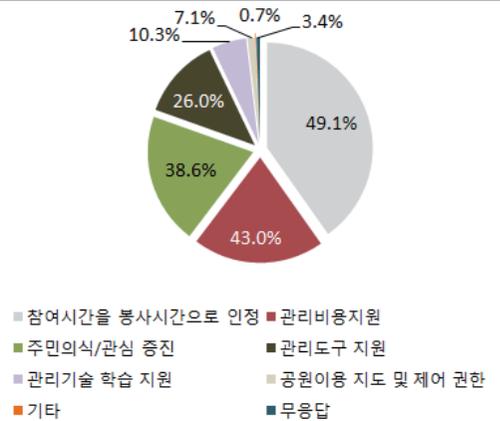
1주일에 1회 이상 빈도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민은 전체 77.4%에 달한다. 화초 식재나 조경관리 등은 매일매일의 활동이 요구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공원관리에 있어 주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요구되는 청소와 조경관리를 구분 혹은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순위	구분	빈도	비율(%)
1	1주일에 2-3회	114	28.0
2	매일	102	25.1
3	1주일에 1회	99	24.3
4	자율이 맡김	45	11.1
5	1달에 1회	33	8.1
-	기타	5	1.2
-	무응답	9	2.2
-	합계	407	100



<그림 3-23> 공원관리 주민참여 빈도

순위	구분	빈도	비율(%)
1	참여시간을 봉사시간으로 인정	200	49.1
2	관리비용지원	175	43.0
3	주민의식/관심 증진	157	38.6
4	관리도구 지원	106	26.0
5	관리기술 학습 지원	42	10.3
6	공원이용 지도 및 제어 권한	29	7.1
-	기타	3	0.7
-	무응답	14	3.4
-	합계(복수응답)	407	17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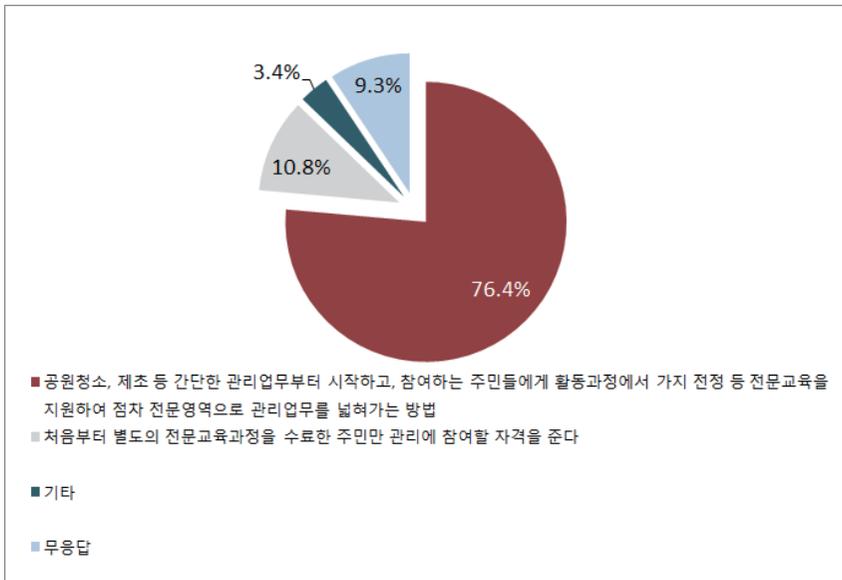
<그림 3-24> 공원관리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한편, 주민참여를 통한 공원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거의 반수에 해당하는 49.1%(200명)가 ‘참여시간을 봉사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하였으며, ‘관리비용지

원’ 43%(175명), ‘주민의식/관심을 증진시켜야 한다.’ 는 응답이 38.6%(157명), ‘관리도구 지원’ 26.0%(106명), ‘관리기술 학습 지원’ 10.3%(42명), ‘공원이용 지도 및 제어 권한을 주어야 한다.’ 는 응답이 7.1%(29명)이다.

공원관리를 주민에게 맡기는 경우 바람직한 방식에 대한 인식은 ‘공원청소, 제초 등 간단한 관리업무부터 시작하고,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활동과정에서 가지 전정 등 전문교육을 지원하여 점차 전문영역으로 관리업무를 넓혀가는 방법’ 이라고 응답한 주민들이 76.4%(311명)으로 월등히 높았다. ‘처음부터 별도의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주민만 관리에 참여할 자격을 준다.’ 는 응답은 10.8%(44명)이며, ‘기타’ 3.4%(14명)로 나타났다. 기타의 견으로는 주민에게 맡긴 후 월 1회의 교육을 한다, 봉사자들에게 적당한 수당을 지급한다, 공원 청소관리 지원비 외에 공원 이용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과 활동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등의 보다 구체적이거나 추가적인 의견이 있었다.

순위	구분	빈도	비율 (%)
1	공원청소, 제초 등 간단한 관리업무부터 시작하고,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활동과정에서 가지 전정 등 전문교육을 지원하여 점차 전문영역으로 관리업무를 넓혀가는 방법	311	76.4
2	처음부터 별도의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주민만 관리에 참여할 자격을 준다.	44	10.8
-	기타	14	3.4
-	무응답	38	9.3
-	합계	407	100



<그림 3-25> 공원관리 주민참여 진행 방식

## 제4절 소결

수원시는 2017년 현재 수원시가 지향해야 할 공원녹지의 발전방향으로서 ‘2020 수원 공원·녹지 기본계획(이하 공원 기본계획)’을 통해 제시된 계획과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이하 공원조례)’에 기반하여 공원의 조성 및 관리등에 근거하여 해당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sup>13)</sup>

휴먼시티를 주창해온 수원시는 도시공원 관리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며, 공원 기본계획에서도 내동네·내공원 가꾸기 프로그램을 통해 공원순찰, 공원시설관리, 조경수관리, 화초가꾸기 및 캠페인 등에 대한 시민참여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인 (재)수원그린트러스트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공원사랑 시민참여단 활동을 통해서도 일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조경가드너 양성 및 조경마주넷 등 일반시민들이 조경기술을 습득하고 상호 교류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한데, 이러한 프로그램의 목적이 조경관련 일자리 창출이나 조경업체 육성지원 보다는 일반시민들이 그들의 생활주변에 있는 수목이나 화초 등에 대한 관심과 전문소양을 갖춤으로써 생활주변녹지를 보다 잘 돌볼 수 있는 개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원조례의 제6조(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제2항 제5호에 의하면, 녹지분야의 전문적 모임이 아닌 일반시민들의 자생단체(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및 노인회 등)에 대해서는 위탁업무를 공원청소, 화장실청소, 제초 등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단순 업무로 한정하고, 전지 및 전정 등 조경수 관리나 화초의 식재 등의 수행을 제한하고 있다.

공원관리의 위탁에 대해서도 전문조직이나 전문단체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원을 사랑하는 일반시민들의 활동영역에 대해서도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공원주변 주민들에 의한 공원관리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서도 일반 주민들의 충분한 참여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근린 주민들에 의한 공원관리 활동이 지역공동체 증진과 지역봉사활동의 관점에서 매우 중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일반 주민들도 스스로 전지나 전정과 같은 전문적 영역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전문성에 있어 당연히 미약한 일반 주민들이 활동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경험을 축적하고, 전문기술을 학습하면서 담당 업무분야를 확대, 전문화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즉 활동과 학습의 연계를 통한 시민참여의 점진적 전문화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13) 시민들이 이용하는 녹지와 관련하여, ‘수원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2015.7.31. 공포)도 있으나, 도시녹화 조례는 민간소유의 녹지유지를 위한 내용을 주로 한다.



## 제4장 시민참여형 근린공원 관리 사례와 시사점

### 제1절 서울시 공원돌보미

서울시의 공원관리와 관련하여 민관협력의 관점에서 사례를 보면 서울숲이 대표적이다. 서울숲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그 조성방안으로 나무와 숲을 민간이 입양하는 방식을 취하고 그에 대응한 기부금 방식을 활용하였다.

민관협력의 공원관리를 위해 서울시는 2006년 서울그린트러스트에 서울숲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시범적으로 시도하였다.

서울숲 관리와 관련한 시민참여 관련 프로그램을 보면 모금 프로그램, 자원봉사 프로그램, 홍보 및 공감대 확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표 4-1〉 서울 그린트러스트의 서울숲 관리 시민참여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기부액	비고	
모금 프로그램	한그루 입양	그루당 30만원	입양한 나무에 명찰부착	
	나눔의 숲	나눔의 숲 조성	평당 30만원/년	지속적인 식생 모니터링 및 관리
		나눔의 숲 입양	참여금1,500만원, 3년 관리비 150만원	-서울숲의 일부구간을 입양하여 관리하는 후원 프로그램 -연6회 활동참여 -기업홍보 배너제작
		공간재생 프로젝트 및 숲 리모델링	-	시민가든 프로젝트
	벤치 입양	사색의 벤치	-	-나눔의 숲 참가자 우선 -서울숲 내 벤치를 개선하고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특별한 사연을 가진 메모리얼 벤치 설치
자원봉사 프로그램	It' s my park day			
	기업/단체 자원봉사	구역 정원사	150만원/년(서울숲 사랑모임 기업회원 가입)	-연2회 정기적 활동
		서울숲 자원봉사의 날 (가족자원봉사데이)	-	-기업, 단체그룹단위 월 수회 자원봉사 -기업창립기념일, 특정일에 맞춰 자원봉사
	서울숲 캠퍼스	-	-대학교와 MOU체결로 연 4회 활동 -학교별 학기당 30명 모집 -사회봉사학점 인정	
입양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서울숲 후원야밤&자원봉사자 시상식	-	서울숲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모임과 시상식	
	서울숲 홈커밍데이	-	서울숲 조성에 앞장섰던 기업인 초청	

자료: 김원주, 2013:23, 〈표 2-3〉 인용

상기 표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기부금을 통한 관리재원의 확보 극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공원관리의 부담을 민간이 함께 사회봉사 차원에서 공유하는 방안으로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공원관리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구역정원사 프로그램조차도 기업의 사회기여와 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도시내 공공시설인 공원관리를 통해 해당 지역의 시민 혹은 주민들의 공동체 관계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적 측면에서는 다루어지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민관협력의 공원관리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하는 본연구의 목적상 검토 사례는 2013년부터 시행된 공원돌보미 제도로 한정한다.

### 1. 공원돌보미 제도 개요

서울시는 2012년부터 ‘가로수 돌보미 제도’를 도입하여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기 시작하였고, 2013년에는 공원에까지 확대한 ‘공원돌보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2가지 제도를 통합적으로 ‘공원녹지 돌보미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사업에는 노인일자리사업<sup>14)</sup>, 초중고 봉사활동<sup>15)</sup>, 돌보미(개인, 시민단체, 기업, 기관 등의 입양)사업이 혼재되어 있다.(김원주, 2013:5)

공원돌보미 활동현황을 보면, 2015년 기준 277개 단체, 5만2천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표 4-2> 공원돌보미 활동현황

2015년 기준

구분	참여 유형			
	계	환경정화	문화행사	기타서비스
2015년	277단체(52,035명)	264단체(39,357명)	6단체(1,929명)	7단체(10,749명)

자료: 서울시, 공원돌보미(Adopt-a-Park) 참여 안내문

#### 1) 목적

공원돌보미제도는 시민들에게 휴식 및 여가공간인 공원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환경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속가능한 공원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4) 노인(65세 이상)에게 5가지 분야(공익, 교육, 복지, 시장, 인력파견)41개 사업을 대상으로 40시간/월 일하게 하고 20만원/월을 지급하는 사업

15) 초등학교 10시간내외, 중고등학교 20시간내외로 권장하고 있으며, 중학교 봉사활동은 시간합산으로 점수화되어 고입내신에 반영되고, 고등학교는 대학입시에서 전공영역에 따라 봉사활동 평가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적용한다.

이전까지 서울시가 공원관리 비용마련과 봉사활동의 연계 관점에서 입양개념을 도입하여 추진해온 정책방향에 더해 민관협력과 자원봉사활동을 근간으로 지역공동체 단위에서 직접 활동하는 그룹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공원관리를 모색하는 동시에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이는 아래에 기술된 공원녹지돌보미 사업설명회 자료(2013.3)에서 강조된 본 사업도입의 배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공원녹지돌보미사업이 왜 필요한가 ?**

- 시민주도형 공원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만족도제고
-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만들기 :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사회가 스스로 풀어가게 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
-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관리 : 행정기관의 한정된 예산인력을 극복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자료: 서울시, 공원녹지돌보미 사업설명회 설명자료, 2013.3.25.)

## 2) 활동내용

또한, 공원돌보미 활동을 신청하는 주체는 일반주민은 물론, 기업, 전문활동그룹 등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주체의 전문성 등의 특성에 따라 활동유형이 분류될 수 있으며, 그 활동 내용에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까지 포함된다.

〈표 4-3〉 공원돌보미 활동그룹 특성에 따른 활동유형

활동 유형	활동 내용
전문성 봉사형	기업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전문역량을 제공하는 봉사활동도우미형태로 주로 공원 직원의 CS교육을 담당하며 다양한 분야의 도우미 들이 있습니다.
공원 조성형	특정 공간을 기업체의 참여로 직접 조성하는 형태의 공원도우미로 각종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설치와 조성을 담당합니다. 각종놀이터조성, 정자설치 및 관리 등을 합니다.
서비스 증진형	가까운 지역의 공원을 시민스스로 관리하여 공원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공원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시민의 녹색복지를 실현하는 시민참여형 공원녹지 관리 방안입니다.
노력봉사형	단순 노동력을 제공하여 공원을 관리해주는 도우미로 화단비료주기, 대청소, 화초 및 나무심기 등 공원을 꾸미고 가꾸는 형태의 도우미입니다.
프로그램 스폰서형	이벤트,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형태의 도우미로 정기적인 음악회 개최, 공원 프로그램 강사, 음악가 등 공원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활동을 합니다.

자료: 서울시, 한눈에 쏙 공원 돌보미안내서, pp.14-15.

공원돌보미의 활동내용은, 관리구역의 청소 및 공원가꾸기(쓰레기 줍기, 잡초뽑기, 꽃수목심고 가꾸기, 화단가꾸기, 낙서지우기 등), 공원시설물 파손위험요인 및 이용불편사항 등의 점검 및 공원관리청에 신고 등을 주로하며 가능한 활동은 다음과 같다.

- 환경정화 : 쓰레기줍기, 잡초뽑기, 수목화초식재, 공원청소, 나무이름표 달아주기
- 시설관리 : 공원 내 시설 유지보수, 제설작업 등
- 안전분야 : 야간 안전순찰, 무장애 공원안내 도우미, 안전점검 등
- 재능기부: 기금후원, 레크리에이션, 공연행사 참여, 통역안내 등
- 기타 : 숲속 모니터링, 공원안내 및 질서유지 등

## 2. 공원돌보미 결성절차 및 지원

### 1) 공원돌보미의 결성

#### (1) 공원돌보미 구성

서울시 공원돌보미 사업에는 종교단체, 학교, 기업, 어르신단체 등 지역공원녹지관리와 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이 있는 모든 시민과 단체가 신청 가능하다.

활동주기는, 주1회, 월1회, 년4회 등 신청단체가 최소 돌보미 활동 주기를 정하여 신청하고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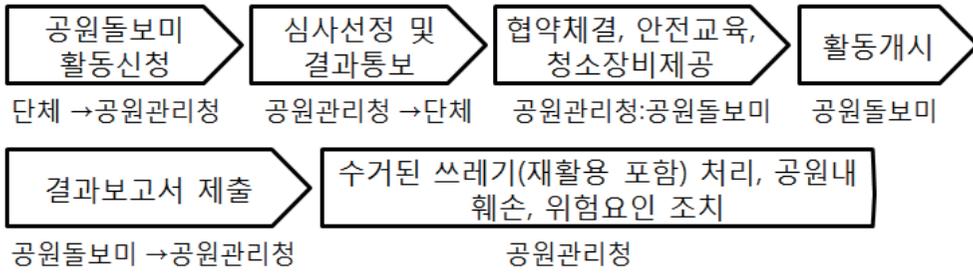
활동기간은 매년활동결과를 평가 후 연장한다. 돌보미단체가 협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서류로 고지한다.

#### (2) 공원돌보미 수 및 활동구역

공원돌보미 활동구역은 1공원 당 1돌보미로 선정되나, 공원의 규모 등에 따라 복수의 돌보미 단체가 선정된 사례도 있다.

#### (3) 공원돌보미 결성절차

돌보미 선정은 대상공원을 지정하여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신청서상에 나타난 단체의 성격 및 신청사유, 활동주기 및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공원관리청(공원녹지사업소, 자치구)에서 최종 심사, 결정한다. 선정된 단체는 공원관리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안전교육과 주의사항을 청취(자원봉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원봉사 등록)한 이후 활동을 개시한다. 매 활동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며, 활동의 결과물인 쓰레기처리나 보고된 위험요인 등을 공원관리청이 조치한다.



자료: 서울시, 2013. 공원돌보미 시범사업 추진계획

<그림 4-1> 공원돌보미 활동 절차

## 2) 공원돌보미 활동지원

서울시는 공원돌보미에 대해, 안전교육, 청소용품제공, 공원관리자 표지판 설치(개당 약 80만원 소요) 등을 지원하고 있다.

### (1) 지원체계

서울시에서 공원돌보미 사업의 관리체계를 보면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의 담당주무관이 공원돌보미 제도를 기획하고 운용하며, 제도전체의 홍보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실제 활동 관리는 3개 공원녹지사업소(동부·서부·중부)와 각 자치구의 공원녹지과(혹은 푸른도시과)가 대상 공원의 관할여부에 따라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 (2)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입양 전 사전 교육, 청소용품제공, 봉사활동시간 인정, 문화행사지원, 대외홍보가 있다.

- 공원 입양 전 교육프로그램 제공: 이론, 실습
- 공원 내에 돌보미 단체를 공원관리자로 표시하는 표지판 설치(고정식)
- 청소용품 제공 : 쓰레기봉투, 장갑, 집게 등
- 봉사활동 시간 인정
- 돌보미단체의 공원내 재능기부 및 문화행사 지원
- 돌보미 단체 활동 대외 홍보 및 보도

그리고, 서울시 자원봉사자 단체상해보험을 통해 공원돌보미 활동중의 상해에 대해 보증을 적용한다.

### 3. 제도 운용특성 및 효과<sup>16)</sup>

서울시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는 공원돌보미 제도의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공원 주변의 단체 및 주민 등의 참여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주인의식 강화 및 지역 애착심을 만들고 있으며,
- 이웃과의 만남, 녹색행복의 실천 및 시민소통의 기회가 되고 있다.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공원돌보미(공원녹지 입양)제도의 기대효과는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보건적 측면에서 검토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4-3> 공원돌보미 제도 기대효과

구분	내용
사회적	공원돌보미는 시민들에게 장소애와 마을공동체 정신을 키워줌
환경적	참여하는 주민들과 청소년들의 환경과 자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에 기여
경제적	깨끗한 거리와 잘 가꾸어진 동네 공원은 지역을 활성화 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보탬
보건적	노인들에게 야외활동의 기회를 부여하여 각종 질병유발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

자료: 김원주, 2013, p.84 <표4-1>인용 수정

서울시는 2030 공원녹지관리계획을 통해 공공주도 민간참여 방식은 시민의 참여를 통하여 인원과 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이며, 민관파트너쉽 방식은 공공과 시민이 서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의 분담이 가능하여 효율적인 공원관리가 가능하다(서울시, 2015:393) 는 인식하에 공원관리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일정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향후 민관협력의 공원관리 정책이 공원관리의 재정적 부담감소와 관리 효율화에 그치지 않고 도시민의 공동체 활동의 계기만들기의 요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관점과 진행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육성되고 관리되는 진행관리적 제도운용관점이 추가적으로 보완, 강화되는 제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 제2절 요코하마시의 공원에호회(公園愛護會)

요코하마시의 공원·녹지정책을 보면 2007년,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갖는 공원·녹지를 단순한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공유재산’으로 보고 미래세대에 계승해 줄 수 있기 위한 4대 현황과제로 ‘녹지감소와 민간소유자의 부담’, ‘지구적 차원에

16) 서울시, 2014.12, p.7.

서의 녹지보존관리’, ‘시민공유의 재산으로서 이해촉진과 일정의 시민부담<sup>17)</sup>’, ‘공원·녹지환경정비를 위한 재원확보’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공원·녹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요코하마다움(요코하마만의 특색 창출)을 위해 시민·민간사업자와 연대·협력활동에 의한 녹지의 보전활동 및 시가지 녹화의 추진 등 녹지를 보존하고 육성하는 종합적인 제도체계의 구축을 도모하였다.

이의 실현을 정책방향의 5개 주안점 중 ‘현 녹지의 최대한 보전’ 이외에는 모두 ‘녹지의 다면적 기능고려’, ‘시민참여 강화’, ‘시민공유재산으로서의 이해 확충’, ‘지역의 특징 및 요구에 기반’ 등 단순한 녹피율 증대가 아니라 시민들에 의한 이용활성화를 통한 시민만족도 증진 및 유지관리 활동에의 직접적인 참여를 강조하였다.

특히 당시 2006년도 환경교육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결과 환경에 관심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공원·녹지 관련 협력활동을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사업자가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활동을 담당하는 사람·단체의 육성, 활동계기와 장소 확대, 정보 공유 등 협동의 장 만들기 및 사람 만들기를 지향하는 코디네이터를 육성·지원이 강조되었고, 실제 시민들이 자연과 직접 접촉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장<sup>18)</sup>을 제공하고 시민활동 단체의 연수 실시 및 관련 정보제공의 충실화 등을 도모하였다. 당시 이러한 정책방향설정에는 시민들의 녹지이용 및 관리에 참여해온 주민활동그룹인 애호회 제도가 많은 영향을 주었다.

<표 4-5> 공원·녹지계획 수립 당시의 수목지 지키기 관련 시민활동 현황

2004년 기준

참여대상	형태명칭	개소	참가지수	활동내용
시민의 숲	애호회	25	855(회원)	산책로, 광장 청소, 제초, 정비계획만들기
교류 수림	애호회	15	749(회원)	관리활동, 새등지 설치 등
숲지킴 봉사자단체	일반공모	30	1488	수림지 보전활동

17) 2004년 공원·녹지관련 시민부담관련 시민의식조사에서 ‘일부부담이 필요하다.’ ‘많지 않다면 부담해도 좋다’가 39%, ‘부담 필요가 없다’가 35%로 나타났다.

18) 시민들이 자연과 직접 접촉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서 대표적인 ‘요코하마 자연관찰 숲’은 자연관찰, 학습지도, 자연환경조사연구, 자연보호활동의 육성·지도 등이 이루어지며, 연간 이용자는 약 3만8천명에 이르고 있다.

## 1. 공원애호회 개요

공원애호회 제도는 요코하마시에서 1964년에 일본 최초로 창설한 제도이다.

요코하마시의 공표자료<sup>19)</sup>에 따르면 2015년 3월 기준, 요코하마시내의 공개된 도시공원 2,648개소 중 2,366개소에 2,432개의 공원애호회가 활동하고 있다. 공원당 애호회 결성율(애호회/공원수)은 약89.4%이다. 2010년도에 비해 공원수가 60개소 증가하였으나 애호회 수는 79개 증가하였고, 공원당 애호회 결성율도 0.7% 증가하였다.

<표 4-6> 요코하마시 공원애호회 활동현황

2010.3.31., 2015.3.31.기준

공개공원 수 ①		애호회 수 ②		애호회가 있는 공원 수 ③		결성율(③/①)	
2010	2015	2010	2015	2010	2015	2010	2015
2,588	2,648	2,353	2,432	2,295	2,366	88.7%	89.4%

자료: 요코하마시 환경창조국 공원녹지관리과 제공 공원애호회 설명자료: 공원애호회란.

### 1) 공원애호회 목적

요코하마시의 도시공원중 비교적 소규모인 가구공원(2300개소, 385.7만㎡, 평균면적=약 1,677㎡)<sup>20)</sup>이나 근린공원(195개소, 324.7만㎡, 평균면적=16,652㎡)등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구역 가까이 위치하는 공원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행정과 협력하여 관리해나가고 있다. 이때, 행정과 협력하여 공원관리를 수행하는 주민그룹이 공원애호회이다.

‘요코하마시 공원애호회 사무취급요강’에서는 애호회에 대해 시민의 휴식의 장인 공원의 관리 및 활용 측면에서 그 중심적 역할을 하는 지역단체로, 공원이 청결하고 안전하면서도 즐겁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원은 애호회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지역 교류의 장으로서 활용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애호회의 활동은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무리가 되지 않는,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참여활동으로 활동 동료 사이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활동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요코하마시의 공원애호회 제도는 공원관리 자체를 위한 제도운용이라기 보다는 공원관리를 보조목적 혹은 수단으로 활용하여 지역공동체의 교류활동의 계기 및 지속적인활동 유도를 주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9) 공원애호회란(요코하마시 환경창조국 공원녹지관리과, 2010.10.06.갱신), 공원애호회 매뉴얼, 2017.

20) 요코하마시 도시공원 수·면적 일람표, 2017.3.기준

## 2) 활동내용

공원에호회의 활동은 주민들의 자발적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활동빈도를 제도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공원상황이나 참여자의사 등을 고려하여 각 애호회 별로 적절한 활동빈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용되고 있다. 그룹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개 월 1회 정도의 빈도로 활동한다. 다만, 폭염(8월)이나 한파(2월)시기 에는 활동하지 않도록 권장되고 있다.

내용으로는 청소, 제초, 물주기 등 일상 활동 외에 시설의 파손 등이 발견된 경우 관할 사무소에 연락하고, 공원이용자에 이용매너 계도 등을 수행한다. 개중에는 공원의 특징을 활용하여 독특한 화단을 만들거나 수림지의 보전활동을 전개하는 공원에호회도 있다. 또, 이벤트 개최, 잡목림의 관리·활용 등, 지역 마치즈쿠리 활동과 연계하는 활동을 행하는 단체도 있다.

애호회 활동의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일상 청소 및 제초, 낙엽제거
- 지역전체에 참여를 요청하여 함께 수행하는 정기적인 일제청소
- 아이들이나 애완견주 등에 공원이용 매너를 지키도록 계도
- 화단이나 식재관리, 물주기
- 관목을 중심으로 한 수목전지 및 전정
- 아이들의 놀이안전 지킴이, 고원시설 고장 등을 소관사무소에 연락
- 공원을 사용한 다양한 지역행사실시: 마을축제, 방재훈련, 건강체조 등
- 잡목림이나 대나무 숲의 보전



<그림 4-2> 청소, 화단관리, 아이들의 참여, 놀이 등 애호회 활동 모습

## 2. 애호회의 결성 및 지원

### 1) 애호회의 결성

#### (1) 애호회 구성

애호회는 공원 주변 지역주민이 구성하는 것으로 공원을 관리하는 토목사무소(이하 관할 사무소라 한다.)나 공원녹지사무소와 자치회 등 지역모두가 합의해서 결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역주체가 되는 구성모체의 예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가 있다. 어떤 조직에서 애호회를 결정하는가의 판단은 지역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활동이 활발·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결정한다.

- 자치회전체로 결성
- 자치회 일부나 반 단위로 결성
- 노인회나 어린이회가 주체가 되어 결성
- 아파트관리조합(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성
- 의지가 있는 지역주민들이 결성
- 시민활동단체, 기업이나 학교

#### (2) 애호회 수 및 활동구역

애호회의 활동구역은 1공원 당 1애호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구공원 등 규모가 큰 경우 하나의 애호회로는 활동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구역을 나누어 복수의 애호회를 결성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결성 시에 관할 사무소와 조정하여 결정한다.

애호회 활동구역은 원칙적으로 공원전역으로 하지만, 경사지 등 위험한 장소나 별도의 관리운영위원회가 있는 장소를 제외한 부분을 활동구역으로 하며, 관할 사무소와 조정하여 결정한다.

#### (3) 결성시 절차

결성의향이 확인된 경우, 활동내용이나 회장 등의 임원을 결정하여 결성계 및 애호회 규약을 관할 사무소에 제출한다. 관할 사무소는 이를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애호회장에게 승인을 통지한다.

## 2) 애호회 활동 지원

요코하마시는 공원애호회에 대해 사례금(활동의 기초적인 액), 기술노하우제공,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의 제공과 대여, 활동보험, 활동 코디네이팅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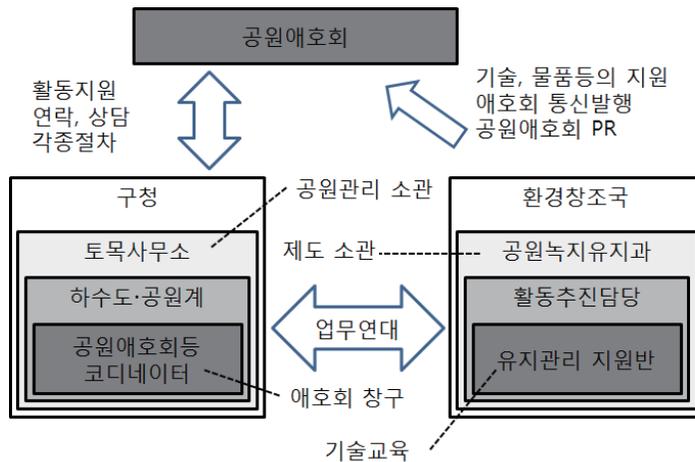
### (1) 지원체계

요코하마시에서는 공원을 관리하는 구청의 관할 사무소가 시청의 환경창조국 공원녹지유지과와 연대하여 애호회를 지원하고 있다.

18개 구의 관할사무소에는 하수도·공원계에 애호회 대응 전문직원 ‘공원애호회 등 코디네이터’가 1명씩 배치되어있다.

활동이나 행정절차, 지원 등의 상담, 연락·조정 등, 애호회 회원모도의 창구기능을 담당한다. 애호회 활동이나 공원별 모르는 점이나 곤란한 것이 있으면 언제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공원녹지유지과에서는 유지관리지원반에 의한 기술지원외에 연4회의 애호회 통신을 발행하고, 지원물품의 배송 등 시내 전 애호회에 대한 일괄적으로 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지원에 대해 구청 관할 사무소 등과 조정해가면서 실시하고 있다.



<그림 4-3> 공원애호회 지원체계도

### (2) 물품지원

애호회 활동에 필요한 갈퀴나 낫 등의 도구류나 쓰레기봉투, 목장갑 등의 소모품, 활동을 PR하기 위한 완장 및 활동표시간판 등의 물품을 지급한다.

매년 1-2월에 각 애호회 별로 물품신청을 받아 예산범위 내에서 수량조정을 하여 4-5월

경에 신청수량 확인과 배송장소 지정 후, 6-7월경에 각 애호회별 지정한 장소로 배송한다.

- 소모품 : 쓰레기봉투, 목장갑, 쓰레받기, 낫, 여름철의 식수
- PR용품: 애호회 활동중 간판, 애호회 명찰, 모자, 완장, 전단지, 애호회 게시판, 예문집&일러스트집 : 회원모집이나 이벤트참여자 모집 전단지나 포스터 제작시 활용
  - ※ 예문집이나 일러스트지 저작권과 관련하여 애호회 활동용으로 사용할 때만 무료 활용가능
- 화초묘목이나 꽃씨, 수목명찰
- 대여물품 : 제초기(제초기연료포함), 전정가위, 전지가위, 톱 등.

### (3) 기술지원

화단만들기, 식재관리, 제초기의 사용 등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때에, 아이들과의 접점을 늘리거나, 지역에 애호회의 PR을 하는 등 활동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때, 그 계기를 만들어 주기위해, 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원한다.

공원유지관리와 관련된 기술과 지식을 갖춘 시청소속 유지관리지원반이나 구청 관할 사무소 직원이 공원에 현장출장 나와 애호회 활동의 확대, 성장을 지원한다. 필요한 재료제공도 행하여진다.



<그림 4-4> 화단가꾸기, 관목관리강습, 제초기안전이용강습, 퇴비장만들기, 수목명찰만들기, 이벤트 지원

#### (4) 애호회비(사례금)

애호회비는 4월1일을 시점으로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애호회에 대해 년 1회 활동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표 4-7> 애호회비(사례금) 지원액수

활동면적	애호회비(연간액수)
3,000㎡ 미만	2만엔
1.5만㎡ 미만	3만엔
1.5만㎡ 이상	4만엔

애호회 존속이나 활동상황과약을 위해 활동보고서, 회장 등 변경계, 현황계, 등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다.

애호회비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로서 지불하는 것이다. 가능한 영수증을 보관하고(3년 정도), 회계보고를 애호회 계시관 등에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등 애호회비의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있다.

<표 4-8> 애호회비(사례금)의 사용처

사용처	적부
지원물품 이외의 도구	○
애호회 주최 행사	○
회의 자료작성비용 및 다과비	○
행정등과 연락에 필요한 우편전화요금, 교통비	○
쓰레기봉투나 목장갑 등 소모품	△
낫이나 갈퀴 등의 도구나 용구	△
화단의 꽃이나 비료, 부사토	△
활동시의 음료수비용	△
망년회 등의 경비	×
개인적인 물품구입	×
활동참여 단체에의 사례금적 경비지출	×
정치단체, 종교단체에의 지불	×
경조사비 및 행사 협찬금	×

○: 바람직한 사용처

△: 기술지원, 물품지원으로 현물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분을 우선 쓰고 부족한 경우 구입, 사용

×: 가능한 사용하지 않도록 함.

<표 4-9> 공원애호회 활동별 지원내용 종합

활동종류		지원내용
기본 활동	제초, 청소	-활동에 필요한 청소도구, 목장갑 등 제공
	애호회 활동PR	-애호회 완장 혹은 명찰, -활동 PR을 위한 접이식 ‘애호회 활동중’ 간판제공 -공원 내 애호회 게시판 설치 -전단지나 포스터 제작 지원
발전적 활동	제초	-안전한 제초기, 낫 대여 -제초기용 연료지급 -제초기 사용법 강습
	관목관리	-전정가위, 전지가위, 톱 대여 -도구사용법 및 수목관리방법 강습
	화단관리	-화초묘목이나 꽃씨 제공 -모종이나 관리강습
	잡목림관리	-톱, 낫 등의 도구 대여 -강습 실시, 소개
	수목명찰	-수목명찰이나 설치에 필요한 물품 지급 -수목명 조사
	낙엽퇴비	-퇴비장 만들기, 퇴비만들기 강습
	어린이 놀이	-자기책임으로 자유로이 노는 놀이터를 -아이들의 놀이를 활발하게 하는 놀이지도사 소개
	이용안전	-방법순찰완장 제공 -필요시 관련기관과의 연대중개 -놀이기구 사용법 강습
	이벤트	-이벤트 실행 노하우 제공 -인력지원

※ 애호회 관련 이벤트는 행사기획, 행사에 필요한 도구나 재료를 지원해 준다.

- 크래프트 교실 : 공원의 나무나 대나무를 전정한 가지 등을 활용하여 펜던트나 대나무잡자리 등 목공, 팽이치기 등, 크래프트 재료 지원
- 고구마굽기대회 : 어린이 회와 연동하여 공원낙엽청소 후 고구마굽기 대회개최, 세로로 자른 드럼통 지원
- 자연관찰게임
- 축제 : 계절별 축제개최, 지역 전통놀이행사 부활

#### (5) 시민활동보험

요코하마시는 시내에서 공익적 목적의 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부상이나 재물손상 등에 대한 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보험적용예시는 다음과 같다.

- 공원 내의 쓰레기 회수를 위해 모으고 있던 빈깡통이나 빈병에 상처를 입었다.
- 자전거를 타고 애호회 물품을 운반하다가 실수로 자전거가 넘어져 주차중의 차에 손괴를 발생시켰다.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자치회나 애호회가 주최한 행사에 주최자가 아니라 참가자로 참가한 사람의 사고
-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레크레이션 활동
- 열사병 및 열사병에 의한 전도에 의한 상해

### 3. 애호회 제도 운용특성<sup>21)</sup> 및 효과

#### 1) 운용특성

요코하마시 환경창조국 공원녹지관리과는 애호회 제도운용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주로 자치회(우리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에 의해 구성되며, 최근 시민활동단체, 학교, 기업 등이 조직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 애호회의 결성 및 활동은 개인이 아니라 조직으로 행하여진다. 공동체 증진에 기여한다.
- 청소, 제초, 관수, 이용매너 지도 등의 기초적 활동에 더해 공원자체의 이·활용 증진 등도 애호회 제도운용 목표의 하나이다.
- 애호회 활동의 기초경비는 2-4만엔 정도이며, 기초활동에 필요한 지원물품의 대여 및 제공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금전적 대가성 활동이 아닌 지역에 대한 공동체적 봉사 활동의 의미가 강하다.
- 분기마다 간단한 활동보고서를 제출한다. 주민활동과 행정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 애호회를 결성함으로써 요코하마시가 활동을 지원하는 외에 공원 내 이벤트 등의 실시에 있어 허가 기준이 완화 된다.

21) 공원에호회란(요코하마시 환경창조국 공원녹지관리과 자료(2010.10.06.갱신))

## 2) 제도운용의 과제

애호회 제도운용 상의 과제를 보면, 크게 애호회 자체과제와 애호회와 지역주민과의 관계성측면에서의 과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애호회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과제는 제도가 도입된지 50여년이 경과되는 가운데 최근 젊은 세대의 신규회원이 들어오는 것이 활발하지 않아 애호회 회원들이 고령화되고 회의 인원이 감소하는 문제이다. 이에 따라, ‘애호회 통상의 활동이 곤란해진다’거나 ‘새로운 활동 전개가 불가능하다’ 등의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

한편, 애호회와 지역주민과의 관계성 측면에서는 ‘애호회 활동이 여전히 지역주민 모두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 제도가 도입된지 50여년이 경과되었고,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왔지만 여전히 자치회나 지역봉사 등 지역공동체활동에 관심이 적은 주민들이 많고 심지어 ‘애호회의 활동이 행정으로부터 돈을 받아 운영되는 위탁청부 사업’으로 오해되는 경우도 있다. 일상생활에 바쁜 일반주민들에게 제도의 취지와 운영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3) 운용 효과

애호회 제도운용을 통한 효과는 민관협력관계의 관점, 지역주민 공동체관점, 공원관리 및 이용 효율화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민관역할분담을 통한 협력적 도시관리(파트너적 민관협력)의 체감 : 행정은 도시환경관리 관점에서 공원의 정비나 시설 개보수, 교목과 같은 키 큰 나무의 전정 등 위험하거나 고가의 전문장비를 동반하는 작업을 담당하고, 주민들은 생활환경관리 관점에서 제초나 벌초, 청소, 이용자 매너계도 등, 화단정리, 관목의 전정 등 비교적 쉽고 경미한 그리고 공원 이용자에 직접 체감하고 공원의 이·활용 및 매력을 높이는 활동을 담당함으로써, 단순한 행정주도의 시민참여를 넘어서 도시관리행정의 파트너적 민관협력의 체감경험을 축적하게 된다.
- 지역주민의 우연적 교류 및 공동체활동 관심 계기제공 : 애호회 활동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조직을 구성하여야만 행할 수 있다. 특히, 공원관리라는 활동특성상 그 활동모습과 활동내용이 지역 주민 다수에게 공개되고 개방되기 때문에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원을 이용주민을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 확대해 나가게 된다. 이는 지역 현장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개적인 지역봉사활동을 통해 회원들과 일반 주민들간의 긍정적 접촉

과 교류 확률을 높여주고 지역공동체를 강화해 나갈 개연성을 높여준다.

- **공원 관리 및 이용효율화 관점** : 공원은 입지나 주변 주민특성 등에 따라 공원관리의 요구수준이 달라진다. 공원애호회를 지원하고, 해당 애호회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공원이용 규제완화 등을 통해 애호회(지역)가 공원을 주체적으로 유연하게 관리·이용함으로써 세밀한 공원의 유지관리 및 이용관리가 가능해 진다. 특히, 공원관리를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공원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상적 민원·갈등을 행정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애호회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해소해 가는 개연성이 높아진다.

※ 공원이용 관리(주민갈등 조정)사례

애호회에 의해 관리되는 공원 근처의 보육원의 원장으로부터 애호회장에게 상담이 있었다.  
 “수요일 오전 중에 원아가 산보를 하고 있다. 그 도중에 공원에서 한번 쉬고 싶지만 항상 연배가 높은 분들이 그라운드골프(게이트 볼)을 하고 있어 아이들이 잠시 쉬어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데 뭔가 안되겠습니까?”

이런 때에 애호회가 그라운드 골프를 하고 있는 노인분들에게 찾아가,

“보육원의 유아들이 오는 10시반 정도에 그라운드 골프를 잠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시는 건 안될까요? 그리고 쉬시는 중에 혹시라도 아이들이 그라운드 골프에 흥미를 보인다면 조금 가르쳐보면 어떨까요?”

라고 의향을 전달하고 상담,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 제3절 공원돌보미 제도(서울)와 공원애호회 제도(요코하마)의 운용특성 비교

공원돌보미 제도와 공원애호회 제도를 비교해보면, 지원항목, 공원이용증진, 조직구성원, 민관관계 측면에서 구분되는 특징을 보여 준다.

우선 지원항목 측면에서의 특징을 보면 공원애호회 제도에서는 공원관리 활동과 관련된 애호회별 자체 전단지 및 포스터 등을 기획, 작성할 수 있도록 예시문구나 일러스트 자료집 등을 지원하고, 활동 구성원을 구별할 수 있는 완장 등을 제공하고 활동게시판을 설치, 지원함으로써 기 주어진 임무 뿐만 아니라 현장 활동기획과 애호회 외 주민 및 공원이용자와의 관계맺음을 유도하고, 관리책임자로서의 위상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 주민은 공원관리에 대한 전문스킬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관련역량을 활동과정 통해 길러갈 수 있도록, 도구대여 및 교육을 병행하여 지원하고 있다. 회의다과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활동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원관리 활동을 보다 견실히 하기 위한 회의 등의 모임을 유도하고 책임감을 증진유도하고 있다.

<표 4-10> 공원돌보미 제도(서울)와 공원애호회 제도(요코하마)의 운용특성 비교

구분		공원돌보미	공원애호회	특징	
지 원 항목	활동표지판	고정식	이동식	-요코하마시는 봉사활동 수행 자체를 중시하며, 개별 구성원을 명확히 하고, 특히 현장기획과 그룹 외 주민과의 관계맺음 및 관리책임자로서의 위상을 유도한다.	
	구성원표식	-	완장, 모자		
	활동게시판	-	고정식		
	음수	공원수도 음수	혹서기 별도 음수 지원		-
	홍보	행정	홍보활동	통합 홍보활동, 일러스트.에문집 지원	역할분담. 주민들의 직접 홍보활동 유도, 지원
		구성원	-	개별 전단지 포스터제작 게시판 활용	
	청소용품	도구 및 쓰레기 봉투	봉투 지원	-	
	관리물품	대상 조직 역량	전문 도구 대여+교육	요코하마는 일반인들이 전문장비 활용	
활동지원금	-	2만~4만엔 (관리면적에 따름)	작은 금액으로 댓가로서 보다는 관리활동의 용이성과 책임감 증진		
공 원 이 용 증진	행사	종류	문화행사 -관리활동 결과물과 연계(낙엽, 나뭇가지 등) 어린이 놀이	-서울은 공원관리 활동과 관계성이 적은 행사	
		지원	-	-요코하마는 공원관리 활동결과물과 연계한 행사	
	지원	-	-기획지원(예시, 가이드) -필요물품 및 인력지원		
조 직 구 성 원	대상 조직 선정 기준	기업, 전문그룹, 시민단체 > 지역주민	주민 > 기업, 시민단체	-서울은 관리성능·효율 중시, 기업 등 특정 단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해당 공원관리에 관심을 갖는 기존 조직 이외의 신규 구성원 발굴이 어려움. -요코하마는 지역 공동체 활동을 중시 지역내 거주하는 관심 있는 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	
	구성원 거주지 (영업지)	-	공원주변으로 공간한정		
	신규구성원 참여	어려움 (조직기준)	용이 (지역기준)		
	관리기술교육	참여자의 기존 역량에 의지	행정의 전문담당자들이 활동별 필요기술 교육	요코하마는 참여구성원이 활동과정을 통해 전문역량을 강화하여 관리의 효율성과 활동지속의 개연성이 증진됨	
민 관 관 계	활동보고	매 활동 후 자 율	분기별 의무	활동보고를 강조함으로써 민관대면 기획 및 자율관리 용이성 증대	
	민 관 협 력	행정	위험, 고가장비 요구활동, 도시환경관리 중심	요코하마는 동일한 공원을 대상으로 행정과 주민이 역할분담 협력	
		구성원	쉽고 경미, 일상체감 생활 환경관리 중심		
	포상	-	활동기간 중시	교류, 홍보, 활동지속성 유도	

공원이용증진을 위한 관리활동 이외의 행사나 측면에서도 서울과 달리 요코하마에서는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을 활용한 행사의 예시나 가이드를 제공하고 필요물품 및 인력을 지원하는 등 공원관리활동의 결과물과 연계하는 행사를 유도·지원하고 있다.

조직 구성원 측면에서 보면 서울은 기업이나 단체 등 기존의 조직을 중심으로 공원돌보미 조직이 선정되지만 요코하마에서는 해당공원 주변의 지역공간을 중심으로 애호회 조직

이 선정된다. 이에 따라, 서울은 관리성능·효율을 확보할 수 있긴 하나, 기업 등 기존의 특  
정화된 단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해당 공원관리에 관심을 갖는 기존 조직 이외의 신규 구  
성원은 참여가 지극히 어려운 구조이다. 즉, 공원에 관심이 있어 해당 활동에 참여하기보  
다는 해당 조직이 공원관리 활동을 하기 때문에 공원도우미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개연성  
이 높아진다. 반면, 요코하마는 공원주변 지역으로 구성원을 한정하기 때문에 해당 공원의  
이용자 및 주변거주자 등 관심이 있는 자는 누구나 해당 애호회에 참여하기가 용이하다.  
이는 애호회 제도가 지역공동체 성을 중시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의 관리활동 요구에 대응하여 요구되는 전문기술 및 도구활용 방법을 행정의 전문  
담당자들이 직접 교육시킴으로써 민관의 긍정적 관계 설정 및 활동의 고도화와 지속화의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민관관계에서 보면 요코하마는 정기보고 및 포상제도 운용을 통해 민관의 대면접촉 기  
회를 확보하고, 평시의 지역주민의 공원관리의 자율성을 높이며, 포상기준으로 활동기간을  
중시함으로써 활동의 지속성을 강조·유도한다. 특히, 동일한 공원의 관리에 있어 위험하고  
고가의 장비가 요구되는 것은 행정이 담당하고 평이하면서 일상적으로 체감도가 높은 생  
활환경관리를 애호회가 나누어 담당함으로써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하는 기회로 활용  
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종합하면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민관협력의 공원관리 정책을 다룸에 있  
어 서울은 공원관리의 재정적 부담감소와 관리 효율화에 제도목표를 두고 실행해 왔다고  
한다면, 요코하마에서는 이에 더해 관리활동이 지역 주민의 공동체 활동의 계기로 작용하  
도록 하는 제도목표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이며, 별도의 교육이 아니라 주민들의 활동과정  
을 통해 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 상황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수정되면서  
고도화 전문화가 이루어져 가는 진행관리적 제도운용관점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이라 해석  
할 수 있다.

물론, 요코하마의 공원애호회는 극히 최근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는 서울의 공원돌보미  
제도와 달리 이미 5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보다 먼저 현실적 과제들을 수정보완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라도 민관협력의 공원관리의 후  
발주자인 우리는 요코하마의 제도운용관점을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제5장 민관협력형 근린공원관리 과제와 방안

### 제1절 시민참여에 의한 공원관리제도의 과제

수원시의 공원관리 정책방향은 공원 기본계획에 나타나며, 운용기준은 공원조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휴먼시티를 주창해온 수원시는 공원관리에 있어 공원순찰, 공원시설관리, 조정수관리, 화초가꾸기 및 캠페인 등에 대한 시민참여에 관심을 가지고 민간위탁 및 (재)수원그린트러스트와의 협조를 통해 일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행 수원시에서 운용되고 있는 공원관리에의 시민참여 제도의 운용상의 과제를 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 관점에서 보완이 요구된다.

우선 행정관리 효율화 관점에서 보완이 요구된다.

수원시 공원관리 업무는 대부분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형 장비나 특수기술이 요하지 않아, 시민참여의 개연성이 높은 소공원과 어린이 공원의 녹지대관리와 청결관리 영역의 소요예산도 2017년 기준 약 24억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원관리 업무 위탁현황을 단위관리비용면에서 민간위탁의 경우가 전문용역업체에 맡기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약 80%정도 수준으로 저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은 전체 위탁공원의 면적대비 2%에, 금액으로는 1.6억원에 그치고 있다. 행정재정의 효율화 측면에서 공원관리에 대한 민간위탁비용의 확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업무내용도 청소에 국한되어 있으며, 위탁 관리 대상단체도 어르신일자리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공공활동 여부를 중시하는 현 위탁관리자 선정기준에서는 공원관리에 현재 대상공원 주변에 거주하는 의욕 있는 일반 주민들의 신규진입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두 번째는 공원관리에 있어 민관협력의 목표상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행정재정의 한계 속에서 관리비용을 줄이면서도, 공원 이용자인 시민들이 공원관리에 직접 참여하여 공원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이용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하는 자칫 모순되어 보이는 목표를 달성하고자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모순적 목표를 달성할 개연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의 근간은 해당 공원의 직접 사용자인 주변 주민들의 공동체적 참여이며, 이를 통해 주민활동의 공공성도 함께 달성하게 된다. 특히, 일상생활 환경속의 공원은 대부분

주거지에 인접한 소규모 공원들이며, 해당 공원의 사용자는 도시적 관점에서의 시민이 아니라 해당 공원 주변의 주민이라는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해당 공원을 일상생활권역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시민은 정책적 관점에서 해당 시설 사용자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원 관리에 있어 민관협력을 통한 공동체 증진을 위해서는 대상 공원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변 주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당연하게도 관리업무위탁 관점보다는 지역공동체 활동의 일환으로서 주민들의 일상적 지역사회 참여 관점에서의 방안이 요구된다. 물론, 이러한 방안은 추진과정에서는 지역사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기존 추진 제도현실과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공원관리 활동에 있어 유사활동에 대한 금전적 댓가 등의 차별 고착화는 오히려 봉사적 관점에서 접근한 바람직한 주민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형태로 공원관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복수의 공원관리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운용에 있어서는 동일 활동에 대한 유사한 가치판단 및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별 제도프로그램들의 종합적인 검토와 조정이 요구된다.

넷째, 시민단체 (재) 수원 그린트러스트와의 협력사업(보조금사업)을 통해 공원사랑 시민봉사단 프로그램을 운용하며, 공원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경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익혀 나감으로써 개인의 역량강화는 물론 봉사활동에 대한 자긍심과 자의식강화를 이끌어 내는 측면이 있는 등 일정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위탁업무에 있어서도 반복적인 단순 업무가 아니라, 활동과정을 통해 조금씩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알아가며, 그 수준의 변화에 따른 창의적 대응변화, 신규구성원 유입과 권유 등 활동의 확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청소업무에 더해, 향후 제초 및 예초, 화초관리 및 식재, 관목의 전자전정, 간단한 조경 시설물 설치 등 공원관리에 있어 시민참여 업무영역을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 물론 단순 업무위탁관점이 아니라 참여하고자 하는 이를 포함하여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이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다. 공원관리에서의 시민참여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기 관점을 고려한 세부적인 제도운용 기준이 요구된다.

다섯째, 공원주변 주민들에 의한 공원관리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서도 일반 주민들의 충분한 참여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근린 주민들에 의한 공원관리 활동이 지역공동체

증진과 지역봉사활동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일반 주민들도 스스로 전지나 전정과 같은 전문적 영역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전문성에 있어 당연히 미약한 일반 주민들이 활동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경험을 축적하고, 전문기술을 학습하면서 담당 업무분야를 확대, 전문화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즉 활동과 학습의 연계를 통한 시민참여의 점진적 전문화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하겠다.

한편, 도시공원이외에도 공동주택 단지 내에도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수목 및 조경 공간이 있다. 이에 대한 관리에도 이제 공공에서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 한일타운의 최근 사례에서 보여지 듯 일선 행정에서 관련 계기를 만들고 이를 주민스스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요구된다.

동시에 주민들의 공동체를 위한 창조적 활동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한일타운 조경두레와 같은 기존의 주민들에 의한 선도적 추진사례에 대한 홍보와 지원방안 등도 요구된다.

## 제2절 민관협력형 근린공원제도 개선방향

수원시의 시민참여형 공원관리제도는 아직은 작은 규모이지만 공원관리비용의 절감, 어르신일자리 창출, 시민들의 공원녹지에 대한 관심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단체가 강화되고 시민들의 역량이 강화되어 왔으며, 자생적인 지역공동체 조직까지 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만하다.

다만, 우리가 주민참여를 통해 공원관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일컬어지는 공원관리의 효율성, 공원 이용률 증대, 주민역량강화, 공동체 증진 등 4가지 효과를 모두 성취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소 한계가 있다.

크게 3가지 관점에서 개선방안에 접근할 수 있다.

우선, 개념적 이해에 관한 부분으로 관리주체에 있어 시민과 주민의 구분이다.

민관협력에 있어 민을 도시관리 레벨에서 접근하여 시민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생활관리 레벨에서 접근하여 주민으로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공공시설의 사용자는 시민임에 틀림없으나 그 시설을 평생 거의 접하지 못하고 존재자체도 인지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해 가는 시민을 해당 공공시설의 사용자라 간주하는 시각에는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일상적 생활 속에 이용하는 소규모 공원의 관리를 대상 공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사용자의 관리참여 뿐만 아니라 지역단위 공동체 교류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표 5-1> 시민과 주민의 구분

공간범위	市	洞
협력대상	시민	주민
목적	도시관리	생활관리

두 번째는 제도운용에 있어 진행관리의 관점이다.

50여년 전부터 관련제도를 운용해 온 요코하마에서는 공원관리의 재정적 부담감소와 관리 효율화에 더해 관리활동이 지역 주민의 공동체 활동의 계기로 작용하도록 하는 제도목표가 추가되어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며, 별도의 교육이 아니라 주민들의 공원관리 활동과

정을 통해 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 상황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수정되면서 고도화 전문화가 이루어져 왔다. 이는 준비(계획, 인재교육) - 실행 - 평가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사업제도 운용방식이 아니라 다소 준비는 덜 되었지만 실행과정을 통해 계획과 제도와 인재를 모두 보완 육성해 가면서 관리해 나가는 진행관리적 제도운용관점이라 할 수 있다.

진행관리형 제도운용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 시민들을 행정의 특정 분야 사업에 참여시키는 데 있어, 매우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민들의 일반적 관심증대와 전문적 학습을 통한 기술소양의 습득과 관련하여서 개개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전문인력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무원인사제도나 비용효율 등 현실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재)수원 그린트러스트와 같은 중간적 입장의 전문적인 시민참여단체를 통해 전문적 기술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지원받으면서 시민형 공원관리와 주민참여형 공원관리를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상기 2번째 진행관리형제도와도 연동되는 것으로 위탁대상주체 선정기준에 대한 문제이다.

위탁기준에는 다시 2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현재에는 전문적 모임이나 자생단체(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및 노인회 등) 등 일정의 법인격을 갖춘 단체만이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다. 법적인 등록절차 보다는 주민 활동그룹의 활동내용과 구성원의 기술증진 정도(교육이수 정도)등에 따라 점진적인 위탁업무범위의 확대가 가능한 공원관리 업무 위탁구조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의 현실적 방안으로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통한 위탁과 그 하부 실행그룹의 하나로서 공원별 주민그룹을 운용해나가는 방식이 고려될 만하다.

다른 하나는, 위탁업무 범위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 위탁업무를 공원청소, 화장실청소, 제초로 한정하고, 있고, 특히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는 자생단체에게는 청소만을 위탁하고 있다. 주민들의 공동체적 활동활성화는 물론 활동을 통한 자존감과 자긍심고취는 물론 공원특성화 측면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전지 및 전정 등 조경수 관리나 화초의 식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기준의 규제개혁이 요구된다. 물론, 이는 상기 2번의 진행관리형에서도 강조된 주민학습 프로그램이 병행되어 운영됨을 전제로 한다.

### 제3절 주민참여형 공원관리제도 도입

2절의 개선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참여형 공원관리제도로써 가칭 ‘동네공원이꾸미’ 제도를 제안한다. 동네공원이꾸미 제도는 공원 및 수변공간 등의 일상적인 관리에 대해 대상지 주변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결성한 봉사단체(동네공원이꾸미)에 의해, 공원·녹지의 유지관리(공원의 청소·제초나 물주기, 공원이용자 계도 등)를 행하는 제도이다.

해당 단체는 공원을 무대로 다양한 지역행사나 공원의 특성을 살린 지역의 화단만들기나 주변 수림의 보전활동 등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대상공원 인근의 가로의 미화나 청소, 가로수 은행의 수확 등도 수행할 수 있다.

동네공원이꾸미의 구성은 공원녹지사업소와 상담을 통해 공원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자치위원회, 노인회, 어머니회, 아파트관리조합 등)을 중심으로, 지역 봉사단체 등의 참여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며,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활동이 활발·원활하도록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판단, 결성한다. 다만, 활동내용과 회장 등 임원, 규약을 정하고, 활동영역은 공원녹지사업소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한편, 시민활동이 활발해지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증가를 고려하여 시민단체나 학교, 기업이 동네공원이꾸미를 결성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들 조직의 승인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들과 연계하거나 그들의 이해 혹은 협력을 얻는 것을 조건으로 하도록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되는 동네공원이꾸미 제도의 운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수원시 동네공원이꾸미 운용기준

##### 제1조(목적)

시민의 휴식 장소인 공원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주변주민에 의한 단체를 육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 운용기준을 정한다.

##### 제2조(동네공원이꾸미의 정의)

동네공원이꾸미(이하 ‘가꾸미’로 한다)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을 대상으로 결성되어지는 모임을 말한다. 다만, 그 외의 종별 공원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가꾸미를 결성할 수 있다.

##### 제3조(가꾸미의 구성)

가꾸미는 공원주변의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학교, 복지단체, 시민단체, 그 외 법인 등도 가꾸미를 결성 또는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정치단체, 종교단체 및 이와 유사한 관련 단체는 가꾸미를 결성 또는 구성할 수 없다.

## 제4조(가꾸미의 수)

공원당 가꾸미의 수는 1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원규모상 복수의 가꾸미가 분할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녹지사업소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 제5조(가꾸미 명칭)

가꾸미의 명칭은 공원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애칭을 부가적으로 붙일 수 있다.

## 제6조(가꾸미 활동내용)

가꾸미는 공원이 청결하고 안전하며 즐겁게 이용될 수 있도록, 다음의 각호에 걸친 활동을 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6호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한다.

1. 청소·제초
2. 수목의 물주기
3. 이용의 조정
4. 이용자 매너 계도
5. 공원녹지사업소와의 연락조정
6. 공원을 활용하는 사업
7. 그 외 가꾸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 제7조(가꾸미의 결성)

가꾸미를 결성하려는 때는 공원가꾸미 결성신청서 및 가꾸미 규약을 공원녹지사업소장에게 제출하고, 결성의 승인을 받는다.

## 제8조(가꾸미의 승인 및 통지)

공원녹지사업소장은 전조의 결성신청서 등에 의해 가꾸미를 결성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이를 승인하고, 그 취지를 가꾸미회장에 통지한다. (제2호양식)

## 제9조(가꾸미의 성립시기)

가꾸미는 제8조의 통지를 한 날을 기해 성립한 것으로 한다.

## 제10조(가꾸미의 임원)

가꾸미에는 회장(이하 ‘가꾸미회장’이라 한다.)을 두어 모임을 총괄한다. 또한, 가꾸미에는 그 외 필요한 임원을 둔다.

## 제11조(가꾸미 신고사항)

- ① 가꾸미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공원녹지사업소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가꾸미회장 등을 변경하는 때
  2. 가꾸미를 휴지·해산하는 때(제4호양식)
- ② 공원녹지사업소장은 전항의 신고를 적정하다고 인정한 때는 이를 승인하고, 그 취지를 제2부시장에 보고한다. 또, 제2호에 대해서는 승인한 취지를 가꾸미회장에 통지한다.

제12조(가꾸미 활동보고)

가꾸미회장은 공인가꾸미활동보고서를 공원녹지사업소장에 매 분기별 제출한다. 다만, 공원녹지사업소장의 판단에 의해 제출회수를 감할 수 있다.

제13조(가꾸미 지원)

공원녹지사업소장 및 제2부시장은 가꾸미의 활동상황에 맞추어,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꾸미 활동에 대해, 다음의 지원을 한다.

1. 청소용구 등의 물품 지급 또는 대출
2. 활동에 관한 기술지원 강좌 등의 실시
3. 그 외 활동의 활성화에 필요한 노하우 제공

제14조(가꾸미 지원금의 교부)

- ① 시장은 가꾸미에 대해, 소정의 기준에 의해 가꾸미 지원금(사례비)을 교부한다.
- ② 가꾸미 지원금은 매년 식목일 현재, 존속하고 있는 가꾸미 및 연도 도중에 새로이 결성된 가꾸미(12월말일까지 공원녹지사업소장이 결성을 승인한 가꾸미에 한함.)에 대해 교부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감액 교부하거나 교부하지 않는다.
  1. 가꾸미가 활동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
  2. 가꾸미로부터 감액 또는 사퇴 신청이 있는 때
  3. 그 외 교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때

제15조(가꾸미 지원금 교부 시기)

가꾸미 지원금의 교부 시기는 대략 7월로 한다. 다만, 연도 도중에 새로이 결성된 가꾸미(12월말까지 공원녹지사업소장이 결성을 승인한 가꾸미에 한함.)에 대해서는 결성 승인 후 지체없이 교부한다.

제16조(기 타)

- ① 이 요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사업소장이 정한다.

## | 참고 문헌 |

<국문 자료>

- 김미나 외(3명)(2009), 서울 숲 공원관리참여 활성화를 위한 관리주체와 공원이용객 인식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44권 1호, pp.223-234.
- 김영하 외(2명)(2015), 주민참여가 금강공원 관리운영에 미치는 영향: 주민단체 선진화협의회의 참여활동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23권 4호, pp.29-56.
- 김용국(2005), 서울시 근린공원 서비스의 질적 평가 및 형평성 분석,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6권 6호, pp.133-149.
- 김용국 외(2명)(2011), 민·관 파트너십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방식 연구, 조경연구 39권 3호, pp.83-97.
- 김용근 외(2명)(2002), 도시공원 관리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의식에 관한 연구: 초안산근린공원의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국환경생태학회지, 16권 3호), pp.287-295.
- 김은희(2004), 한평 안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 주민참여형 한평공원 만들기, 국토연구원, 국토 12월호(통권 278호), pp.67-72.
- 김해숙 외(2명)(2014), 아파트 공동체 주민참여의 사회관계 분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5권 6호, pp.75-84.
- 김현중 외(2명)(2016), 도보권 근린공원의 최적입지 선정에 관한 연구 :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환경학회, 주거환경 14권 1호(통권 31호), pp.41-57.
- 김홍렬 외(1명)(2015), 한·일간 주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관리 유형 및 특성 비교 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50권 6호, pp.127-144.
- 김학로(1980), 주민참여에 관한연구-도시행정의 수요압박을 주목하며-, 국토계획 15권 1호, pp.59-67.
- 류연수 외(4명)(2012), 대구광역시 도시근린공원의 경관생태학적 형태 특성 분석,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6호 4권, pp.59-70.
- 박울진(2010), 도시공원녹지 관리에 대한 주민참여 의식: 익산시 일반이용자와 환경단체의 의식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45권 1호, pp.199-209.
- 박울진, 김화옥(2010), 근린공원 시설유형에 따른 이용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과학회지, 19권 4호, pp.427-436.
- 박울진 외(3명)(2012), 근린공원 시설이용의 이용자와 관리자의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6권 2호, pp.65-74.

- 박찬용 외(3명)(2003), 대구광역시 도시근린공원의 유형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38권 6호, pp.113-124.
- 박청인(2010), 주민의 공원녹지의식에 따른 도시공원녹지확충 연구: 수원시의 공원녹지사례 중심으로,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4권 3호, pp.29-37.
- 반영운 외(5명)(2008), 광역권 근린공원의 이용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청주시의 구룡공원을 대상으로, 도시행정학고 21권 3호, pp185-203.
- 서주환 외(2명)(2014), 광고호수공원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디지털디자인학 연구 14권 4호, pp.935-946.
- 송인주(2013), 서울시의 민간기여 공원녹지 현황과 활성화 방안,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153호.
- 양진희 외(4명)(2002), 공원관리에 있어서 장소 귀속감에 따른 주민참여의식 비교: 쉼터 어린이 공원을 사례로, 한국조경학회지 30권 5호, pp.66-77.
- 윤은주(2011),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특례에 관한 지침마련을 위한 연구, 행정안전부.
- 이경주 외(1명)(2009), 근린공원 입지계획지원을 위한 공급적정성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통권 63권, pp.107-122.
- 이양주 외(1명)(2014), 지역맞춤형 도시공원 조성관리 방안,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 이환기(1999), 대도시 근린공원 개발을 위한 이용자 행태분석, 대한관광경영학회, 관광연구, pp.75-97.
- 조필규(2010),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민참여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2권 4호, pp.63-86.
- 구자훈 외(3명)(1996), 주민참여형 주거지 정비수법개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원주(2013), 서울시 수목 및 공원시설 시민입양 제도 도입 방안, 서울연구원2013-PR-04.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1), 「주민참여 효율화를 위한 행정홍보 기능 강화방안」.
- 세코 카즈호(世古一穂)(1998) 시민참가의 디자인(市民参加のデザイン), 동경(東京):교우세이(ぎょうせい).
- 하성규·김태섭(2003), 한국도시재개발의 사회경제론, 서울: 박영사.
- (재)수원그린트러스트(2016A), 공원녹지 시민참여현황 조사연구사업 결과보고서
- (재)수원그린트러스트(2016B), 공원사랑 시민참여단 운영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 결과보고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39호, 2016.5.29., 일부개정]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504호, 2015.3.23., 일부개정]

수원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서울시(2013.3.25.), 공원녹지돌보미(Adopt-Greens) 사업설명회 자료  
서울시(2014.12.), 이웃과 함께하는 공원돌보미 안내서  
서울시(2016.1), 한눈에 쏙, 공원 돌보미안내서  
서울시(2013). 공원돌보미 시범사업 추진계획  
서울시(2015.7),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요코하마시 공원애호회 매뉴얼(2017.8.기준)  
요코하마시 공원애호회 사무취급요강 [환창관리제3208호, 2011.3.31.개정]  
공원애호회란(요코하마시 환경창조국 공원녹지관리과 자료(2010.10.06.갱신))  
2017년 수원시 도시공원 관리 공사 및 용역 추진현황(수원시 공원관리과 자료)  
2017년 수원시 공원현황, 공원관리과 내부자료(2017.5기준)  
수원시청(<http://www.suwon.go.kr>)

<영문 자료>

Arnstein, Sherry R.(1969)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 Vol.35 No.4, pp.216-224.  
Cranz, G. and M. Boland(2004) Defining the sustainable park: A fifth model for urban parks, Landscape Juurnal Vol.23, No.2 pp.102-120  
Cunningham, James V.(1972) Curriculum Essays on Citizens, Politics, and Administration in Urban Neighborhoods, Citizen Participation in Public Affairs, Vol. 32, pp. 589-602.  
Shen, T.(2007) Study on the interaction between Community Park Design and Residents' Behavior Pattern. Master Thesis, Chia University of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Institute. Taichung City.  
Lickert, Rensis(1961) New patterns of management, New York:MacGraw-hill inc.



# Abstract

## **A Research on the management Condition & Improvement Direction of Maintenance Based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small Neighborhood parks in Suwon**

This is the study on the plans of neighborhood parks in Suwon City for the residents to manage them seamlessly and independently so as to contribute the efficient park management, increases of their uses and enhancement of local communities, aiming to suggest the frameworks of execution plans such as operational guidance of park management system in public-private cooperation. Theoretical background of policy direction was secured to confirm the conceptual meaning on the neighborhood park and participations of the residents from the previous studies and literature survey, and the management practices of neighborhood parks and the efforts for the citizens' participations performed by Suwon City were investigated upon the data from the related departments and the institutions in Suwon City and the interviews with the persons concerned.

The implications for further system establishments were confirmed by the comparisons of system cases and operational characteristics between Seoul and Yokohama together with the perception survey of the dwellers near the parks on the status of park management in public-private cooperation and their participations. Based on the study results, five aspects were proposed to consider the design of citizen participating park management system in the future as follows;

1. Efficiency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2. Target model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in terms of park management
3. Similar value determination and feedback on the same activity
4. Strengthening competency by activity process and change of works by stages
5. Induce to recruit new members

Besides, it is required to review the system plans for the management on the trees and the gardening space within the apartments, though they are not the parks, to make the momentum in the administrative parts of the institutions and to induce the dwellers to manage them by themselves.

Keyword : Public-private cooperation, Participation of residents, Park management, Institution, Support

## < 부 록 I > 주민 인식조사 설문지

-	<b>공원관리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주민설문</b>	ID
---	------------------------------	----

안녕하십니까?

수원시는 공원관리를 위해, 공원 인근 주민들에 의한 지속적이고 주체적인 공원관리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원관리’는 나무 물주기, 쓰레기 줍기, 잡초제거, 나무전정, 화초식재, 놀이지도, 조경/환경학습 등을 이야기 하는 것이며, 주민들의 공원 관리 참여 모임을 통해 지역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공원관리 실태와 현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참여의사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원 관리의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서 활용되오니 성의 있게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9월

연구수행자 : 수원시정연구원 김주석

조사수행기관 : 수원시정연구원

문의 : 이다미 031-220-8040 / dm702@suwon.re.kr

###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 작성 요령

1. 문항을 잘 읽고 해당하는 응답의 보기번호 앞  안에 V를 체크해 주십시오. 예)
2. 또는, 문항을 잘 읽고 해당하는 내용을 직접 써넣어 주십시오. 예) 0) 기타 상업점포 우대

I. 귀하의 신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성

2) 여성

문2. 귀하의 나이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1) 20세 미만

2) 20~29세

3) 30~39세

4) 40~49세

5) 50~59세

6) 60세 이상

문3. 귀하가 지동에 거주하신지는 몇 년이 경과되었습니까?

1) 5년 이내

2) 5~10년

3) 10~20년

4) 20년 이상

문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회사원

2) 가정주부

3) 자영업

4) 교사

5) 공무원

6) 학생

7) 시민단체

8) 기타 \_\_\_\_\_

문5. 귀 가정의 연 가구소득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1) 2000만원 이하

2) 2000~4000만원

3) 4000~6000 만원

4) 6000~8000만원

5) 8000만원 초과

문6. 귀하는 시민/주민단체 혹은 자원봉사단체에서 활동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1) 있다. → 문6.-1로

2) 없다. → 문7. 로

문6.-1 귀하가 활동하신 경험이 있는 단체명은 무엇입니까? (모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 II. 귀하의 수원시 공원관리 인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원관리’는 나무 물주기, 쓰레기 줍기, 잡초제거, 나무전정, 화초식재, 놀이지도, 조경/환경학습 등을 이야기 하는 것이며, 주민들의 공원 관리 참여 모임을 통해 지역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문7. 귀하의 거주지 인근에 있는 공원의 이용 빈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1) 매일  2) 1주일 3회 이상  
 3) 1주일 1회 이상  4) 한 달에 1회 이상  
 5)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문8. 귀하가 거주지 인근 공원을 자주 이용하는 혹은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자주 이용하는 이유  2) 이용하지 않는 이유
- 

문9. 공원의 관리는 현재 누가 수행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 1) 행정(공원녹지사업소 소속 공무원)  2) 용역업체 위탁  
 3) 시민사회단체 위탁  4) 공원 인근 주민 위탁  
 5) 시민봉사활동  6) 기타 \_\_\_\_\_

문10. 공원관리의 수행주체는 누가 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하십니까?

- 1) 행정(공원녹지사업소 소속 공무원)  2) 공원이용자  
 3) 공원 인근주민  4) 일반시민  
 5) 기타 \_\_\_\_\_

## III. 귀하의 참여의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11. 주민참여형 공원관리제도(주민들이 인근공원을 직접관리 하고 행정이 관리도구 및 소정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1) 들어봤고, 내용도 잘 알고 있다.  2) 들어봤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3) 들어본 적이 없다.

문12. 공원 관리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 1) 있다. → 문12.-1로  2) 없다. → 문13. 으로

문12.-1 공원관리에 언제, 어디서, 어떤 경로로 참여하셨고, 어떤 관리활동을 하셨는지 간략히 기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13. 거주지 주변 공원을 관리하는 일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1) 있다. → 문13.-1로  2) 없다. → 문13.-2로

문13.-1 공원관리에 참여하고자 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 1) 마을에 대한 애착  2) 이웃간 교류 친목도모  
 3) 봉사활동  4) 취미/여가활동  
 5) 건강관리  6) 자녀교육에 도움  
 7) 부업(관리에 대한 금전적 대가)  8) 기타 \_\_\_\_\_

문13.-2 공원관리에 참여할 의사가 없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생활이 너무 바빠서  2) 금전적 대가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3) 조경 등 관리 전문기술이 없어서  4) 지역공동체에 관심이 없어서  
 5) 기타 \_\_\_\_\_

**IV. 공원관리 활동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14. 주민들이 공원관리에 참여하는 경우, 주민에게 말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활동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 1) 공원청소  2) 잡초제거  
 3) 화초식재  4) 나뭇가지 전정  
 5) 공원이용 및 놀이지도  6) 조경/환경 교육  
 7) 기타 \_\_\_\_\_

문15. 주민에 의한 공원관리는 어떤 빈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일  2) 1주일에 1회  
 3) 1주에 2-3회  4) 1달에 1회  
 5) 자월에 맞긴다.  6) 기타 \_\_\_\_\_

문16. 주민참여를 통한 공원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 1) 참여시간을 봉사시간으로 인정       2) 관리도구 지원
- 3) 관리기술 학습 지원       4) 주민의식/관심 증진
- 5) 관리비용지원       6) 공원이용 지도 및 제어 권한
- 7) 기타 \_\_\_\_\_

문17. 공원관리를 주민에 맡기는 경우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공원청소, 제초 등 간단한 관리업무부터 시작하고,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활동과정에서  
가치 전정 등 전문교육을 지원하여 점차 전문영역으로 관리업무를 넓혀가는 방법
- 2) 처음부터 별도의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주민만 관리에 참여할 자격을 준다.
- 3) 기타 \_\_\_\_\_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부 록 II > 일본 도시공원의 종류

대분류	소분류	내용
가구 기간 (基幹) 공원	가구공원	주로 가구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원으로 1개소당 0.25ha를 표준으로 배치한다.
	근린공원	주로 근린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을 위한 공원으로 2ha를 표준으로 배치한다.
	지구공원	주로 도보권내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을 위한 공원으로 4ha를 표준으로 배치한다.
도시 기간 공원	총합공원	도시주민전반의 휴식·관상·산보·유희·운동 등 종합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으로 도시규모에 따라 1개소당 10-50ha를 표준으로배치한다.
	운동공원	도시주민전반을 대상으로 주로 운동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으로 도시규모에 따라 1개소당 15-75ha를 표준으로 하여 배치한다.
대규모 공원	광역공원	주로 하나의 시정촌 구역을 초과하는 광역의 레크리에이션 수요를 충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으로 지방생활권 등 광역적 블록 단위별로 1개소 당 면적 50ha이상을 표준으로 배치한다.
	레크리에이션공원	대도시 그 외 도시권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선택성 풍부한 광역 레크리에이션 수요를 충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종합적인 도시계획에 기반하여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을 주체로 대규모 공원을 핵으로 각종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배치된 일단의 지역이며, 대도시권 그 외 도시권역에서 용이하게 도달가능한 장소에 전체규모1,000ha를 표준으로 하여 배치한다.
국영공원		하나의 도부현의 구역을 초과하는 것 같은 광역적인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설치하는 대규모 공원에 있어서는 1개소 당 면적은 대략 300ha이상으로 배치한다. 국가적인 기념사업 등으로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설치목적에 적절한 내용을 갖도록 배치한다.
완충 녹지등	특수공원	풍치공원, 묘원 등의 특수한 공원으로 그 목적에 맞추어 배치한다.
	완충녹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의 공해발지 완화 혹은 콤비나아트 지대 등의 재해방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지로, 공해, 재해발생원 지역과 거주지역, 상업지역 등을 분리차단하는 것이 필요한 위치에 대해 공해 재해의 상황에 대응하여 배치한다.
	도시녹지	주로 도시의 자연적 환경오염 보전 및 개선, 도시의 경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되어지는 녹지이며, 1개소 당 면적 0.1ha이상을 표준으로 배치한다. 다만, 기성시가지 등에 있어서는 양호한 수림지등이 있는 경우 혹은 식수에 의해 도시에 녹지를 증가 또는 회복시켜 도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녹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규모를 0.05ha이상으로 한다.(도시계획 결정을 행하지 않고 임차지에 정비하여 도시공원으로 배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녹도	재해시 피난로 확보, 도시생활의 안정성 및 쾌적성 확보등을 도모하기 위해 근리주구 또는 근린주구 상호를 연결하기 위해 설치되는 식수대 및 보행자로 또는 자전거로를 주체로하는 녹지로 폭원 10~20m를 표준으로하여 공원, 학교, 쇼핑센터, 역전광장 등을 상호 연결하도록 배치한다.

주) 근린주구=간선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사방 약1km(100ha)의 거주단위



| 저자 약력 |

김주석

공학박사(사회공간시스템학)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현)

E-mail : tinkneti@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도시(주거지)재생을 위한 지역단위 주민계획·조직의 통합적 운용」(2017 도시재생 논문 공모전, 국토교통부)

「수원시 마을만들기 과제3」 (2015, 수원시정연구원)

「수원 도시계획 지속발전 방향연구」 (2014, 수원시정연구원)



